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책임자: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자: 송동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자경(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연구원)

농 립 부

본 보고서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농림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차 례

제 I 장 서론	1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3. 연구범위	5
제 2 장 국내 농산물 가공산업과 관련 정책 현황	7
1.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와 가공식품 관련 농정의 개선과제	7
가. 국민 생활패턴과 식문화의 변화에 대한 농정의 대응요구	7
나. 현행 식품산업 관련 정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11
2. 농산물가공지원사업 현황	15
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개요	15
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주요 내역	18
다.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의 성격과 운영현황	21
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격과 운영현황	27
3.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35
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의 관계 파악의 필요성	35
나. 농림부 지원 가공업체 지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38
다.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부분 여성농업인 참여 현황	42
제 3 장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46
1.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46

2. 지표의 근거·내용 및 분석 지침	47
가. 정책입안·결정단계	48
나. 정책집행단계	53
다. 정책평가단계	55
3. 분석결과	58
가.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요	58
나. 정책입안·결정단계	60
다. 정책집행단계	73
라. 정책평가 단계	78

제 4 장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창업활동 지원방안 88

1.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창업활동의 특징	88
가. 수작업 중심의 여성들의 섬세한 솜씨와 전통의 손맛	88
나. 공간적 범위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	90
2.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활동 요구사항	92
가. 가공식품 사업 신청 및 경영상의 요구	92
나. 법·제도적 개선 요구사항	96
3.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의 정책적 과제	99
가.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체계의 확립	99
나. 소규모 가공식품 산업육성의 법률적 명시와 관련 제도 개선	101

제 5 장 해외사례 - 일본의 농촌여성기업(起業)	104
1. 일본의 농촌여성기업(起業)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104
가. 여성기업(起業)의 개념	104
나.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 활동의 정책적 배경	105
다.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전개과정	107
라. 일본 농촌여성기업(起業) 활동의 의의	109
2.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 활동의 현황	111
가. 여성기업(起業)수 동향 및 판매규모	111
나. 여성기업(起業) 경영내용 및 운영형태	113
다. 예산지원	115
라. 교육프로그램	117
3.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 주요 사례 및 시사점	119
가.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주요 사례	119
나.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시사점	122
제 6 장 결 론	124
1.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총괄	124
2. 국내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의 발전방향과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126
3. 정책제언	129
<참고문헌>	132
<설문지>	13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와 더불어 오늘날 농업은 과거 제1차 산업 중심의 성격을 벗어나, 종자에서부터 외식산업 그리고 식탁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제2차 산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종자산업, 농자재산업,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¹⁾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문화·서비스업 등의 제3차 산업부분도 농업발전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특히 주목할 점은 식료공급의 주도성이 농업의 제1차 산업 부문에서 제2차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식품산업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공식품 영역이 주도하는 식료공급 역할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제1차 산업 부분의 국내 농업 위축과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의 반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원료농산물, 신선식품의 공급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형태의 변화와 함께 생산물의 조리·가공 등의 영역으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 더욱이 외식산업이 식품소비의 47%를 차지하는 등의 지속적 성장에서 가공식품산업 영역의 위치가 제1차 산업부분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양한 소비자의 식생활 요구에 대응한 식품산업 성장 자체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농가경영 유지·발전의 핵심 관건 중 하나이다. 또한 농촌 현장의 농산물 가공사업 전개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는 물론 농촌 유희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농산물 및 농촌부존자원의 활용을 통한 가공식품 산업 진흥은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가공사업의 주요 영역인 전통

1) 국내에서 가공식품 또는 가공산업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크게 달리하고 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영역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의 먹을거리를 원료농산물, 신선식품,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이 중의 가공식품 제조업을 가공산업으로 두고자 한다. 이 같은 분류에서 식품산업은 원료농산물을 제외한 범위가 되며, 원료농산물까지를 총괄하는 먹을거리 전체는 식료로 구분한다. 참고로 국내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정의를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두고 있으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으로 농산물가공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식품 산업은 농업의 문화적 가치 증진의 중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 식문화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농촌발전의 관계 등에서도 가공식품 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가공식품 산업 진흥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효용가치 증대 등의 단편적 이해를 넘어 국내 농업발전의 핵심 과제로 확고히 자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 단계 국내 가공식품 산업 성장이 곧 국내 농업발전과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는 가공식품 사업을 포함한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발전 자체가 수입농산물과 식품 수출을 통한 발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하에 농정 밖의 범위에서 주도하는 대기업 주도의 음식료품 가공식품 산업 부분은 국내 농업과의 연관성에 본래적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식자재 원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 농산물과 수입식품을 원료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식품산업은 육성 자체의 요구에 선행된 국내 농업과의 구체적 연관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농업과 가공식품 산업의 연계강화가 국내 농정의 절실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농업생산 현장으로부터의 다양한 식품산업 범위에서 가공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제1차 산업중심의 농정의 탈피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농정구상의 요구로 집약된다.²⁾

식품산업에 대한 어떤 구상과 방법을 갖는가가 향후 국내 농업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농촌현장에 기반을 두고, 농업주체의 다양한 참여 속에 국내 농업과의 구체적 연관을 갖는 식품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농정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촌현장의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등의 가공식품 산업은 전체 식품산업에서 비중은 협소하지만, 농촌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현장 가공식품 산업 진흥은 일거리 창출, 일자리 제공 그리고

2) 이와 관련 최근 농정관련 식품산업 연구의 주요 주제가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또는 지원 방안에 집중되고 있는 바도 주목할 부분이다. 관련 연구에는 (황수철 외, 2006), (황수철 외, 2005), (김철민 외, 2004), (이동필 외, 2001) 등이 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등으로 지역 활성화의 중요 매개가 되고 있다. 지역 선도 농가, 농촌공동체 등이 가공식품 산업 참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촌현장 가공식품 산업은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며, 또한 음식과 식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사업진출 또는 참여가 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농정의 가공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특히 농촌현장의 가공식품 산업 육성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 방안을 다루고 있다. 농정의 범위에서 가공 식품산업과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관관을 해명하며, 젠더이해에 기초한 가공식품 산업의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거쳐 그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공식품 산업분야 여성농업인들의 창업과정과 참여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의 개선과제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산업의 참여 확대 또는 가공식품 분야의 창업활동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포함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농정의 가공 산업·식품산업 정책의 개괄에서 출발하여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기초로 여성농업인의 가공 식품 산업 부분 창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국내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관련 정책 현황’에서는 국내 농정에서 가공식품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식품산업의 전반적 이해에서 포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과 구체적 연관 속의 가공식품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농정에서 가공식품 산업의 위치와 관련정책 및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국가 식품산업의 전체 위상에서 현 농정의 식품산업 범위를 점검하고, 그 개선과제도 함께 모색한다. 현 농정의 국내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점검하며, 개선과제와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

사업 점검은 농업종합자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육성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법·제도, 시행지침 그리고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2003년까지 추진한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그리고 그 연장선의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과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도 간략히 점검한다. 이들 사업은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시설에 비해 소규모 가공식품 산업 참여자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제2장에서의 접근은 농정자료와 선행 연구를 참고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차원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실적을 간략히 소개한다. 가공식품을 포괄한 범위에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에 비해 농정의 실상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포함한 식품산업 포괄을 전제로 한 농정 전반의 재편 요구로 이어진다. 현재 원료농산물과 식품의 범위가 부처를 달리하는 현실에서 식품산업 부분에 대한 농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식품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현 농정에서의 가공식품 산업 지원은 기업형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농촌현장 또는 산지 중심의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내 농업과의 연관 속에서 향후 농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가공식품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3장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법·제도와 시행지침 등을 총괄하는 범위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의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은 가공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담당자, 정책집행자 그리고 정책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담당자와 정책집행자 대상 설문 및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부분에 맞게 세부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지표는 정책입안·결정, 집행, 평가의 3단계로 나뉘지며, 크게 9가지 항목의 질의로 이루어졌다. 정책 대상자는 크게 생활협동조합 등의 가공식품 생산업자 중 여성,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사업자 중 여성,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여성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설문은 방문, 전화설문 등을 병행해 진행하였으며 가공식

품 사업의 참여 동기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가공사업 참여의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질의하였다.

제4장 농산물가공산업과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은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총괄 정리와 함께 농업·농촌의 현재적 조건에서 가공식품 산업과 여성농업인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의 가공식품 산업 또는 농정의 가공지원사업의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성격도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전제 속에서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방안을 점검하며, 현재의 법·제도·정책 등의 개괄을 통해 창업희망 여성농업인에게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제5장 해외사례에서는 일본 농촌여성의 기업(起業)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06년 1월 ‘농촌여성 기업활동 실태조사 개요’는 오늘날 일본 농촌여성기업이 9,050건에 이르며, 지역자원,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을 비롯해 관련 기관은 농촌여성 기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5장은 이를 기초로 일본의 농촌여성기업 활동의 현황, 추진체계 및 정책, 주요 사례 등을 국내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의 참고자료로 소개하고 있다.

제6장 결론은 성별영향평가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여성농업인 창업지원방안의 개괄과 함께 정책제언으로 향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산업에서 가공산업·식품산업 부문으로 범위 확장이 크게 요구되는 현 농정의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기초로 농정에서 가공산업·식품산업 접근방안을 개괄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현 가공산업·식품산업과 여성농업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더불어 국내외 사례 개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전제로 한 국내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의 지원 방안도 함께 제기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는 농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접근으로 연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정의 가공식품

산업 관할 범위는 주로 제1차 생산품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입식품을 포함 제2차 산업범위에서는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등 관계 법령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가공식품 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만 축산물은 최종 소비단계 전까지의 과정을 농정에서 총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로 제시되는 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사업과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가공시설 내용도 간략히 언급한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03년까지 시행된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 그리고 그 연장선의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과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참여한 여성기업 대상 조사사업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행해졌다.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을 통한 여성기업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 농촌여성기업 사례의 개괄평가 역시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방안 모색 차원이다.

총괄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식품산업의 개괄적 파악과 함께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참조로 현재의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산업부분 창업활동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국내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과 정책 현황

1. 국내 농업환경의 변화와 가공식품 관련 농정의 개선과제

가. 국민 생활패턴과 식문화의 변화에 대한 농정의 대응요구

국민생활 패턴과 먹을거리 문화의 변화 등으로 국내 농정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간편식·편의식 추구경향 등으로 먹을거리에서 가공식품과 외식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이해증진과 웰빙문화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요구를 넘어 건강식품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 부분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정식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47%에 이르고, 전체 식품비 중 외식비중도 46%에 이르는 등 제1차 산업부문의 원료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국민 먹을거리에서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국민의 최종 식료소비에서 가공식품과 외식범위의 식품산업 영역이 77%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민생활패턴과 그에 따른 먹을거리 변화,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이상 국내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생활 패턴과 먹을거리 문화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각인과 함께 농정의 식품산업 접근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 국내 가공식품 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더 이상 안전성 기준의 관리·감독 차원에만 머무를 문제가 아니다.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는 총괄적 과정의 파악 속에서 가공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농정의 역할 확대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자리하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 외의 식료유통, 외식산업도 같은 범주에서 농정의 주요 영역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표 1> 1인당 실질음식비의 추이 및 구성비의 변화³⁾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부문 별 지출	곡류(원)	12,831	14,628	15,182	14,193	13,429	9,603	9,366	6,333
	신선식품(원)	10,134	9,137	15,210	18,609	25,102	30,729	23,980	18,355
	가공식품(원)	6,742	7,935	13,053	17,149	23,100	26,923	34,033	40,215
	외식(원)	575	639	1,676	4,037	15,741	31,031	34,596	42,536
1970 =100	곡류	100.0	114.0	118.3	110.6	104.7	74.8	73.0	49.4
	신선식품	100.0	90.2	150.1	183.6	247.7	303.2	236.6	181.1
	가공식품	100.0	117.7	193.6	254.4	342.6	399.3	504.8	596.5
	외식	100.0	111.1	291.5	702.1	2737.6	5396.7	6016.7	7397.6
구성 비	곡류(%)	42.4	45.2	33.6	26.3	17.4	9.8	9.2	5.9
	신선식품(%)	33.5	28.3	33.7	34.5	32.4	31.3	23.5	17.1
	가공식품(%)	22.3	24.5	28.9	31.8	29.9	27.4	33.4	37.4
	외식(%)	1.9	2.0	3.7	7.5	20.3	31.6	33.9	39.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주 : 식료품비의 모든 항목을 1995년 기준 식료품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했음.

한편 지금까지 국내 식품산업은 육성정책의 부재와 함께 국내 농업과의 별다른 연관 없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점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인 이상의 식품산업은 업체 수에서 0.26%의 점유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점유에서는 37.88%를 기록하고 있다. 역으로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11,853개로 전체의 78.09%에 이르지만, 매출액 점유율 6.71%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업체수 점유율과 매출액 점유율 비중의 역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가공식품 산업 역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 다국적 기업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제분업, 장류산업, 유지가공, 음료가공 등의 영역은 수입 밀가루, 콩, 옥수수, 열대과일 등의 절대적 의존 속에 발전해 왔다. 최근 웰빙문화 속에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의 대기업 참여는

3) 황수철·권승구·위태석,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 비교연구 및 개발』, 2005, 12, p11.

유기농가공식품 시장에서도 수입농산물 의존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근 국내 통계에 따르면 유기농식품 시장 자체가 수입가공식품으로 넘쳐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음이 이 같은 경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표 2> 식품산업 종업원 규모별 분포

규모(인)	업체수	점유율(%)	매출액(억원)	점유율(%)
계	15,179	100.00	241,280	100.00
4인 이하	8,713	57.40	6,071	2.52
5-10	3,140	20.69	10,103	4.19
11-20	1,516	9.99	12,688	5.26
21-30	636	4.19	10,962	4.54
31-50	567	3.74	15,996	6.63
51-80	253	1.67	12,757	5.29
81-100	82	0.54	7,776	3.22
101-150	95	0.63	14,152	5.87
151-200	50	0.33	13,854	5.74
201-300	46	0.30	15,526	6.43
301-500	42	0.28	29,993	12.43
501-1000	29	0.19	54,842	22.73
1001이상	10	0.07	36,553	15.15

* 법인업체수로 집계,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출처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약청 2002

국내 식품산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참여도 두드러진 경향이다. 이 같은 결과로 식품산업 성장이 국내 농업·농촌발전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농산물 의존을 심화시키며, 국내 농업생산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가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으로 편중되고 있다. 또한 기업형 식품산업은 국내 농업발전과 연

계하더라도 농산물 유통의 대형화와 규모화 요구를 전제로 하며, 이는 일방적인 저가 농산물 공급 요구와 함께 농업생산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일방적 종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의 식품산업의 수입농산물 의존 심화는 국내 농업생산 여건과 기업 요구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더불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중심의 식품산업 성장은 국민 먹을거리 문화의 서구화를 재촉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농정에서의 식품산업 부문의 접근 요구는 무엇보다 국내농업과 무관하게 성장해온 식품산업 전반의 반성과 함께하고 있다. 식품산업 육성의 단편적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업과의 연관강화를 기본 전제로 한 식품산업 및 관련정책에 관한 새로운 전략 요구이다. 농업 다원적 기능의 이해 증대와 함께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의 다양한 실천방안 속에서 가공식품 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강화가 요구된다. 가공식품 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단순한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판로확보, 가격안정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업인과 지역생산자 조직이 주체가 된 가공식품 산업 육성 자체가 농촌지역 발전의 중요 활력소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범위에서 산지가공산업 육성, 전통식품산업 육성 전략이 자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활패턴과 식문화는 제1차 산업중심의 농업정책, 그리고 순환형 지역사회구상의 농촌정책과 같은 범주에서 식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농업정책, 농촌정책, 식료정책의 총괄을 통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소비자의 구체적 이해와 요구, 식료산업 영역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한 농업경영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영역에 가공식품 산업이 자리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향후 국내 농업발전은 가공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식품산업에 대해 어떤 구상과 방법을 갖는가에 크게 좌우될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농촌현장에 기반을 두고, 농업주체의 다양한 참여 속에 국내 농업과의 구체적 연관을 갖는 가공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농정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현행 식품산업 관련 정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내 농업과 큰 연관을 갖지 못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식품산업이 성장해 온 원인으로는 국내 농정과 식품산업의 소원한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농정이 원료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산업의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정에서 식품산업의 전개는 무수한 정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1차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산물 부가가치 채고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여러 부처로 업무가 나누어진 가운데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부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현실과 더불어 국내 농업정책과 연관을 갖는 식품산업 정책의 새로운 도입이 농정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육성정책의 부재 속에 지금까지 국내 식품산업 관련 정책은 감독과 규제가 중심이었으며, 그 주요 관할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해 왔다. <표 3>의 농·축산물의 식품산업 관련 역할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 및 관련식품에서 농정의 관할 범위는 재배단계에 그치고, 수입과 가공 등의 제2차 산업 이상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할 영역으로 되어 있다. 축산물은 수의학 등의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국내 가공, 수입 및 유통까지를 농정에서 관할하고 있다. 식품산업에 대한 이 같은 관리·감독의 범위로 농림부의 식품산업 참여는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차의 단순가공품을 포함한 원료농산물의 수급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농정이 국내 농업과의 연관 속에 식품산업육성과 이를 총괄하는 정책을 방기해 왔다는 지적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식품산업 전반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로 되어있다는 연장에서 전국 획일적 식품산업 관리·감독이 국내 농업과 무관한 식품산업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산업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식품위생법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관련 식품산업은 신고제이든 허가제이든 모두 이 법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위상으로 식품위생법은 농·수·축산 관

런 식품산업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농·수·축산 관련 식품의 관리·감독은 동법에서 명시한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시설 및 식품첨가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별 기준과 규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농·축산물의 식품산업 관련 역할 범위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통 (보관/운반등)	소비 (식당, 백화점등 최종판매단계)
	재배/사육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농산물 및 관련식품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 및 관련식품	사육		도축·가공		농림부	
						식약청

그렇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농·수·축산물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은 농업·농촌과의 연계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차원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이 농·수·축산 관련 식품을 총괄하고 있지만, 위생과 안전에 관계되는 관리·감독 차원의 접근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식품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한 발전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의한 총괄적 관리·감독이 지역특성의 구체적 반영을 요구하는 산지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품산업법 및 식품공전에 의한 획일적 관리·감독을 벗어나 지역특성의 구체적 반영을 전제로 한 새로운 관리체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농정의 식품산업에 대한 접근 요구는 식품산업 육성을 넘어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성 확보를 필요로 한다. 가공식품 산업을 중심에 둘 때는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성, 생산규모 등에 따른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원료농산물의 성격에 따른 구분 그리고 기업형 음식료품 가공산업과 농가·생산자 조직 주도형 산지가공식품·전통식품 등으로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식품은 국내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직접적인 참여 또는 항상적 네트워크에 기

반 한 발전이 가능한 영역들이다.⁴⁾

원료농산물을 기준으로 한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구분관리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관리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 국내산 원료 활용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식품 관리는 원산지 표시, 유전자조작농산물 표시 등 표시제도가 중심이다. 그러나 표시제도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의 접근으로 수입농산물 또는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표시제도만으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전자조작농산물, 환경호르몬, 포스트하비스트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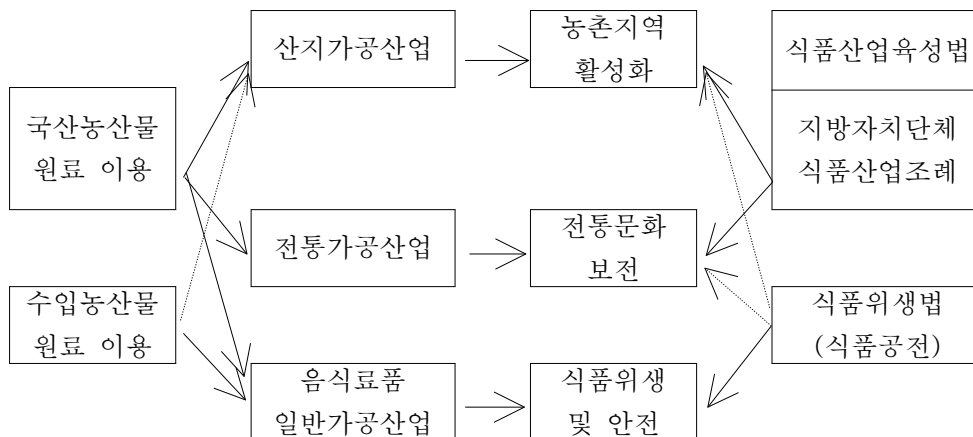
국내 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산업은 기업형 음식료품 가공산업과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 산업, 농가 참여형 가공식품 산업 등으로 구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의한 감독과 규제 중심의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을 전 식품산업 영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 등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 의한 규제는 시설 규제 그리고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양의 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통식품은 지역문화와 풍토가 깊이 관계된 것으로, 지역특색 발현이 전통식품 산업발전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통식품의 관리·감독은 전국적 획일화 보다는 해당 지역의 구체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이들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전통과 역사 속의 전통식품이 식품공전 상의 식품첨가물 종류와 양의 규제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지역 식문화 발전의 장

4)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전통식품을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생깁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주, 장류, 김치류 등의 식품가공산업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산지가공산업은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산지가공산업은 지역적 특색을 갖는 일반 농산물가공산업을 총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애가 된 사례가 간혹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상의 안전성 기준 준수는 곧 식품산업 시설에 대한 규제로 농가 참여형 소규모 식품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조례를 통한 산지가공식품과 전통식품에 대한 육성제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의 관리·감독 문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규모로 일괄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이다. 산지가공식품 생산자들은 농산물 가공공장의 폐수를 일반 기업형 가공공장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유기농 채소·가일 가공시 세척한 물이나 착즙 후의 부산물 등은 그대로 농작물 재배 등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폐수 방류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천연염색과 화학염색도 오염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나 동일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림 1>식품가공산업의 관리·감독 체계의 새로운 구성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 전통식품산업과 산지가공산업을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 성격으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을 총괄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식품산업육성법 논의가 그 주요 대안일 수 있다. 그리고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농정에서 총괄하는 한다고 할 때 식품산업법의 주관부서가 농림부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지역단위 인적·물적 자원의 창의적·종합적 활용과 큰 관련을 갖는다. 인적·물적자원의 창의적 종합적 활용은 오늘날 지역발전 전략의 가장 핵심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이들 식품산업 발전은 단순히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일거리 및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증대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2.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현황

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개요

최근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등에서 식품산업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사업 대상 영역도 산지가공식품, 전통식품 그리고 농업인 만에 그치지 않고, 외식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등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2005년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온 식품안전처 신설 또는 식품산업육성법(안) 제정 움직임 등에서 농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해 왔다. 이 논의는 국내 농업과 연관한 가공식품을 아우르는 식품산업 발전 그리고 식료정책의 도입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식품산업 포괄에 대한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 농정은 아직까지 제1차 생산물 역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농정에서 식품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식료의 안정공급 논의와 사업 내용이 전에 비해 크게 강조되고 있지만, 농정의 기본 틀은 과거의 농업·농촌 그리고 소득정책의 범주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형국이다. 단적으로 현재의 부족한 식품산업 관련 농정마저도 총괄관리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농정 내의 식품산업은 농산물유통국 내 식품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유통국 내 식품산업과를 배치한 것은 농정의 주 업무가 제1차 산업영역 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현 농정에서 식품산업은 제

1차 농산물과 구분된 정책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단지 농산물 이용증대와 수급조절 그리고 가격안정 차원의 접근에 머무를 뿐이다. 그 결과 식품산업과의 주 역할은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또는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제1차 산업 생산물의 판로확보 나아가 부가가치 증대 정도로 정리되고 있을 뿐이다. 농림부가 포괄하는 실제의 식품산업 영역은 양곡부분, 채소·과일부분, 특작부분, 축산부분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또한 다른 사업 등에 내용적으로 포괄되어 전개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이 같은 사정에서 농림부 내 식품산업은 여러 과로 분산 배치되고 있는 사정이다.

농림부의 부처 명을 농식품산업부로 개칭하자는 논의도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재점검하고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식품산업을 포괄하는 농정의 새로운 재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정 틀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소득정책의 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농정에서 가공식품을 포괄하는 식품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농림부 각 과로 산재해 있는 식품산업의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농정 조직은 농림부 내 (농)식품산업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해당 사업을 통일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의 농정에서 주요한 식품산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산지가공식품, 전통식품, 전통외식식품을 관할하는 별도의 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배치는 농업과 식품의 연계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통합 연계하는 기본 요구라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산지 농업인의 가공식품 참여 확대와 정보제공을 위한 창업교육·정보과 등의 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전제될 때 농식품산업부 등의 부처 명 개정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정에서의 식품산업의 취약성은 관련 법률에서도 확인된다. 현 농정에서 식품산업 관련 법률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⁵⁾.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5)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림부 식품관련 법률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이 법률이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등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 농림부의 식품산업관련 법률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낙농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검역법, 농작물재해보상법 등을 들 수 있다.

있으며, 해당 산업들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 제1조(목적)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명시에도 불구하고⁶⁾, 이하의 법조문과 실제의 집행범위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의 제1차 산업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1조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 범위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차원에 그치고 있는 점은 법 제정 당시의 국내 농업 여건⁷⁾,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농정의 의지부족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식품산업과 관련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한계는 이 법의 농산물 가공산업 정의와 이에 근거한 적용범위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농산물 가공산업을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농정에서의 가공식품 산업의 위치가 1차 생산물의 단순 가공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전제로 한 식품산업의 관리 및 육성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전면 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체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라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산지가공산업 육성과 전통가공식품, 전통외식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 산지가공산업의 가공업자는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 가공업자까지를 총괄함으로써 사실상 산지가공업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가공식품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통외식산업은 농산물의 수급 원활 및 소비촉진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

6)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제정당시의 명칭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제정 취지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문제 해결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다. 따라서 제정 당시부터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농촌현장의 가공산업 육성 등 단편적 접근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가공식품과 전통외식산업을 일반가공업과 구분 짓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같은 구분이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보전 차원의 전통식품 보전과 발전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법률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이 산지가공산업과 큰 차이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체계로는 종자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산업 그리고 그 매개로서 가공식품 산업육성의 구체성을 마련하기는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국내 식품산업 정책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산업육성법 등의 제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새롭게 확대 정의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한 이들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용의 포괄적 접근 범위를 넘어 기업운영 주체와 농업·농촌 그리고 지역의 특색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주요 내역

현재까지 농정에서의 식품산업 접근의 근본 한계는 이를 국내 농업과의 연관속의 육성방안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는 가공식품 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체계적 접근은 창업 준비 단계의 교육, 창업지원, 시설지원,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가공사업의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단편적 사업에 그치고 있다. 농정에서 행해지는 주요 교육사업, 인력육성사업 등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 관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개별 분산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상의 규모도 크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의 한계 속에서 현 농정에서 대표적인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육성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으로 압축된다.⁸⁾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현황과약도 이 2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농산물가공업체운영실태조사는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사업체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농림부 관련 산지가공사업과 전통식품사업 업체의 대개가 이 자금의 지원으로 설립된 경우들이다.

그 외 포괄적 범위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중심으로, 전통식품홍보 지원,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명인지정, 가공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주류제조면허 추천제도, 지리적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된 특징은 우리 전통의 식문화 계승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재고 그리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이다. 전통식품 등 국내산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들 다수가 자체적인 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이에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행하겠다는 취지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 ‘물레방아마크’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마크가 부착된 전통식품에 대해 농림부가 품질을 보장하며, 이에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통식품의 인지도는 많은 개선 과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정관련 사업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으로 직접적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의 요구로 가공사업 지원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시범 운영되는 향토산업육성 계획이 그 대표적 예이다. 향토산업육성계획은 당초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을 목적으로 두었지만, 사업 선정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식품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이 같은 귀결은 전통의 문화, 지역 전통자원을 가공식품 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가

8)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외에도 농산물가공공장 컨설팅, 전통식품홍보,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품질인증, 전통식품명인지정, 가공식품의 KS표시제도, 가공식품원료 원산지표시제도, 주류제조면허의 추천제도, 지리적표시제도 등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대개는 홍보·판촉 등과 관계된 것이며, 해당업체에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농산물가공공장 컨설팅과 전통식품홍보 지원이 전부이다.

공식품은 음용, 식용에서부터 생활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에서 지역 창의가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이외 농업농촌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에서도 가공식품 사업이 연계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표 4> 2007 향토산업육성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 (품목)	사업명	사업내용
광주 (전통 떡)	광주 전통민속 떡 산업육성	◦기장떡, 모시잎떡, 퓨전떡 등 전통떡의 고급화 ◦포장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경기 양평 (장류)	양평 유기농 장류 산업육성	◦유기농 간장, 된장, 청국장 등 개발 ◦전통장류 체험관 지원 ◦유기농업단지 조성
경기 고양 (선인장)	고양 선인장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선인장 발효음료, 두부 응고제, 사료 첨가제 등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생산설비 지원
강원 평창 (메밀)	봉평 메밀 관광상품화	◦메밀차, 분말, 메밀나물 등 상품개발 (효석문화제 연계) ◦봉평 메밀꽃밭단지 조성
충북 음성 (인삼)	음성 신선편이 인삼개발	◦세척 신선편이 인삼개발 ◦홍보관 및 인삼판매장 설치
충북 진천 (쌀과 작두콩)	진천 쌀과 작두콩을 이용한 향토제품 개발	◦작두콩의 항염증 효능을 활용한 피부미용 제품 개발
충남 청양 (구기자)	청양 구기자 산업육성	◦구기자 김, 구기자 제리, 구기자 선물세트 개발 ◦신품종 및 재배기술 지원
충남 당진 (약쑥)	당진 초락도리 약쑥개발	◦약쑥액비, 약쑥 쌀, 전통 송순주의 상품화 ◦약쑥재배단지조성 : 10ha
전북 완주 (생강)	봉동 생강 명품화	◦드래싱용 생강즙, 튜브생강, 다짐생강 등 개발 ◦비가림 재배시설 : 9ha
전남 보성 (대마)	보성 대마를 이용한 산업화	◦고급섬유, 위생패드 및 필터, 건축자재 등 개발 ◦재배단지 조성(100ha) 및 체험관 설치

전남 장흥 (호박)	장흥 호박이용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박 식혜, 호박 비누, 호박 막걸리 등 개발 호박 체험관 설치
전남 진도 (구기자)	진도 구기자를 이용한 전통 식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기자 고추장·된장·떡, 차류 등 개발 가공시설 설치 및 브랜드 개발
경북 영천 (포도)	영천 포도 웰빙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씨, 포도껍질에서 화장품 원료 추출 포도전시관, 연구시험포 등 지원
경북 성주 (참외)	성주 참외씨를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외씨 기름, 참외씨 환, 참외씨 분말 등 개발 포장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경남 함양 (죽염)	함양 죽염 웰빙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질의 죽염생산, 죽염응용상품 개발 죽염타운 조성, 죽염축제 활성화
경남 합천 (딸기)	합천딸기를 이용한 주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딸기 주스, 발효주, 케익, 미용재료 등 개발 비규격품 딸기 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
경남 통영 (동백)	통영 동백씨를 활용한 화장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백유, 동백수를 추출하여 미용제품 개발 헤어제품, 아토피 화장품 등
제주 북제주 (녹차)	제주 녹차 관광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차 캔음료, 국수, 김치, 녹돈 등 개발 녹차 다원 조성 : 80ha
제주 남제주 (천연염색)	제주 천연염색 명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갈옷, 침구류, 관광상품 등 개발 체험장, 제품개발센터 지원

출처: 농림부

다.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의 성격과 운영현황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은 농업종합자금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 전통의 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고유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설비 지원이 중심이며, 개·보수자금,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부지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 농림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

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를 두루 포괄한다.

사업자 선정은 가공공장 신규건설 사업희망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승인 전에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와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결과를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통보 및 도지사(광역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 지원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비는 농협(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직접 신청가능하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각 지역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로 지정받은 곳은 시장·군수의 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고, 자금 지원 후 관할 시·군·구에 1개월 내 통보토록 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구분없이) 3%의 금리를 적용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 이상 30억원 한도 내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농업종합자금은 1999년 제2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의 개시와 함께 시범 도입되어, 오늘날 농업정책금융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출 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와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 등의 병행과 함께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위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전까지 보조 중심의 대출이 융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에서 사업경영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크게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농업종합자금의 이 같은 전환은 제1단계 농업구조조정 정책에서의 보조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이 규모화·시설화 등 농업구조개선에 일정 기여했지만, 농업경영의 외부의존성을 심화시키면서,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반성에 따른 결과

9)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협동조합), 농림부 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부 장관이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및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으로 하고 있다.

이다.

그러나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지원의 이 같은 전환에서 주목할 점은 1999년 이후 실제의 시설비 지원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말 현재 1,108개로 집계되는 지원업체 수의 대부분은 1989년에서 1998년 사이에 지원 설립된 업체들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연도에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시설은 연간 5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표 5>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연도별 시설투자 지원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4		2003		89~2002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사업량	지원액
계	1,108 (207)	293,479	3 (1)	883	5 (1)	1,665	4 (15)	4,214	1,096 (190)	296,717
전통식품 개발사업	570 (136)	95,790	1 (1)	500	0 (1)	1,000	3 (11)	3,033	566 (123)	91,257
산지일반 가공사업	297 (67)	180,346	2 (0)	383	5 (0)	665	1 (2)	541	289 (65)	178,757
특산단지	241 (4)	17,343	·	·	·	·	(2)	640	241 (2)	16,703

주) 1. ()는 추가 지원내역이며 사업량에 포함되지 않음.

2. '99~'04년 지원내역에는 자동화시설자금이 포함됨.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9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시설투자가 1989년에서 1998년 사이에 집중된 것은 당시까지가 농정의 제1차 농업구조개선 기간으로 시설자금 지원 전액이 보조로 이루어진 점에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제1차 농업구조개선에서의 농정의 주요 요구는 농업의 규모화·시설화를 통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두어져 있었다. 당시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시설투자도 이 같은 농정의 목표에 따른 결과였고, 따라서 농촌현장의 충분한 요구를 담기 보다는 정책적 시혜로 설비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였다. 많은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시설투자가 농업인의 요

구와 지역별 시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의 자금지원규모에 맞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해 노후화 등에 따른 가동중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설립 당시부터 시설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¹⁰⁾ 1999년 이후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시설 지원은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에 따라 3% 금리의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후 투자의 급속한 축소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물론 전적으로 농업 정책금융의 융자전환이 원인의 전부일 수는 없다. 실제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지속적 개방농정의 전개 속에 농업경영의 악화가 지속되어간 점이 될 것이다. 농업 정책금융을 활용해 가공식품 사업으로 개방화에 대비해 가공식품 사업체는 설립했지만 실제 경영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는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의 부재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금융을 통한 사업체 건설은 유도해, 농업의 활로를 열고자 했지만 그 이상의 준비를 행하지 못한 정책 오류에 대한 지적이다.

설립 당시의 무리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이용 시설은 또 다시 재래 영세기업이란 지적이 생겨나고 있다. 당시 농업경영체의 주체적 여건과 시장·지역사정의 충분한 검토 없이 시설 규모화 중심의 방만한 투자로 오늘날 많은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시설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 이후의 경영지도와 사후관리 부재가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시설의 부실과 도산의 중요 원인이었다는 지적도 주목할 부분이다. 농산물 가공식품 시장의 확보, 현대적 경영기법의 도입,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적극적 활용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제도적 정비 등의 많은 요구에 정책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본래적으로 산업의 발전은 생산의 장려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다수 소비자의 이해를 수렴한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확보를 통한 판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농업경영체의 주체적 여건과 지역여건에 맞는 가공식품 산업이 자연스레 발생해 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지원은 이러한 정상적 산업발전 추세에 순응해

10) 강원도 S사업체는 장류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 사업신청을 하자 요구에도 없는 스티프시설을 들여 주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도 실제 장류제조는 가마솥을 이용하고 있어 스티프시설은 설치 이후 한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고 한다.

전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1단계 농업구조개선 시기와 맞물려 설치된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시설은 경영지도, 사후관리 등의 준비없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강요한 결과였으며, 오늘날 다수가 가동중단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정부지원가공업체 대상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례 조사보고¹¹⁾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가동 중인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시설은 573개로 전체 1,108개의 51.71%의 범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535개 업체는 가동 중단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4년 597업체에 비해 24개 업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가동업체들 중에는 전통식품개발 업체가 430개, 산지일반 가공이 143개이다. 경영주체별로는 농가공동 293개, 생산자단체 171개, 특산단지 61개, 일반업체 48개로 구분된다¹²⁾.

<표 6> 2005년 말 기준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지원 가공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전체		가동중단업체		가동업체	
		업체수	지원	업체수	지원	업체수	지원
합계		1,108	293,479	535	112,269	573	181,210
전통식품 개발사업	소계	811	113,133	381	39,087	430	74,046
	농가공동	449	72,209	156	21,533	293	50,676
	생산자단체	121	23,581	45	5,939	76	17,642
	특산단지	241	17,343	180	11,616	61	5,727
산지일반 가공사업	소계	297	180,346	154	73,182	143	107,164
	생산자단체	147	125,830	52	36,616	95	89,214
	일반업체	150	54,516	102	36,566	48	17,950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9

11)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9

12) 농가공동은 농가5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운영조직, 생산자단체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특산단지는 농가부업단지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운영조직, 일반업체는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반식품 가공업체로 구분된다.

다만, 농업종합자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가동률은 크게 올라간다.¹³⁾ 05년 말 현재 관리해제 업체는 574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후관리 중인 업체는 534개 업체이며, 이를 표본으로 한 가동업체 수는 450개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대상업체 기준 가동률은 84.3% 크게 올라가는 셈이다. 농업종합자금 운영에서 사후 관리기간이 10년 인 점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 업체는 1996년 이후에 설립된 가공식품 업체들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최소 1996년 이후 설립된 농림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나름대로 사업성을 갖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관리중인 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통식품개발과 산지일반가공의 가동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 중인 가동업체 450개 중 전통식품이 330개로 73.3%를 차지하며, 산지일반가공사업은 120개 업체로 26.7%이다. 경영주체별로 구분할 때는 전통식품 개발사업 업체 중 농가공동이 256개 업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2005년 말 기준 가동 중인 사후관리 대상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개소)	비율
전통식품 개발사업	소계	330	73.3
	농가공동	256	
	생산자단체	61	
	특산단지	13	
산지일반 가공사업	소계	120	26.7
	생산자단체	84	
	일반업체	36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9

13) 농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는 자금지원 후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 파악 등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지원 후 10년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두고 있다.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 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성 등 농업인의 사전준비에 조력토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경영 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가공식품 시설의 부실과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산지가공업체 등의 식품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식품산업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극히 짧아, 제품 품질향상의 끊임없는 추구하고 함께 신상품 개발 요구가 항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만큼 자금력과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산지가공업체 등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마땅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다수의 산지일반 가공사업이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 일반 음식료품 가공기업과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산지가공업체 등은 일반 음식료품 가공기업과의 경쟁 추구 보다는 농가자체의 기술력과 독특한 장기를 활용한 틈새시장 활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격과 운영현황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농산물가공사업 시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융자지원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에 제시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은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에게 국내산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그리고 ‘업체들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체제 구축’을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 성출하기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농산물 가공부문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선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평가 강화와 업체별 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써 상호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 경영체 육성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에 기초하여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 또는 주류 제조용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농산물 가공업체, 일반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주류 제조업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이후부터는 외식업체·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금운영 주체는 농협중앙회 및 시·군지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나뉜다. 농협중앙회 및 시·군 지부는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회원조합, 기타 가공업체로 분류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을 담당하며, 전통주류 제조업체 대상 농산물 가공원료수매자금과 2005년 이후 신규대상에 포함된 외식업체·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도 담당한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며, 금리는 농안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차이를 두지만, 업체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회원조합은 3.0%, 기타 가공업체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자금 배정은 연 1회 자금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업체의 요구에 맞게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 등에 대해서는 월별신청, 월별배정도 이루어진다.

자금신청 경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구분되는데 지역농협 등 회원조합은 농업협동조합에서, 그 외의 경영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절차를 받게 된다. 진행 순서는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월까지 공고 및 지부·지역본부와 본사, 지사를 통해 희망업체로부터 자금을 신청 받는다. 이를 기초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본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농림부 보고와 시·도로 통보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지원액이 지역본부·시군지부와 지사를 통해 가공식품 업체로 전달된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지원한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로 하고 있다. 다만 경영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업체간 20억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및 경영평가 결과 우수업체, 계약재배·수매 우수업체 등은 10억원 이내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10억원 이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업체 선정 기준에는 ①컨설팅 사업을 2회 이상 받은 자, ②총 수매액 대비 농가계약 수매실적 비율이 높은 자, ③소규모 가공원료를 사용(영세업체)하는 자, ④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 ⑤농림부 장관으로

부터 전통식품 명인지정을 받은 자, ⑥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 ⑦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어 이들 우선순위가 큰 변별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배점 등에 따른 해당업체 탈락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사항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전통식품과 산지가공산업 육성 방향에 따른 새로운 조정의 검토도 가능하다.

<표 8>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사업추진절차

구 분	농업협동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	비 고
사업광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농림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실제의 자금지원은 당해연도 자금 신청액과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년도 사업실적은 당초 자금지원 조건이 지원금액의 125%를 수매토록 하는 것과 관계되며,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는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전체 지원금을 당해년 자금 신청액과 전년도 사업수행 실적을 고려해 신청업체 전체에 균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의 대출금액은 사업신청 금액 또는 원

료자금의 80%를 지원 한도액으로 하고, 업체별 신청액과 전년 실적을 60 : 40의 비중으로 구분·지원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신규 신청은 60점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금액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운영의 불안정으로 신청·배정 후에도 자금 포기율이 50%를 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업체의 자금포기는 주로 담보력 부족 때문이다. 대출 기간은 전통주류가 2년이며, 그 외는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환형식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국내 농산물을 수매하고자하는 모든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운영 규모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가공식품 업체에 관한 정보의 전달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정보는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에서 항상적인 열람이 가능하다. 그 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달 수단은 농업전문지 등의 광고가 활용된다.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담당 부서를 통해 회원조합으로 별도의 정보를 전달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관할 지사에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사업담당자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시행이 오랜 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식품 업체의 인지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실제 이용 여부는 홍보와 전달문제이기 보다는 여신 등 대출자금의 상환능력이 더 큰 영향을 갖는다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영세업체 등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알아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이 같은 설명은 본 연구과정에서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대상의 설문에서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일치되는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물가공업체 대상 유선 전화설문에서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의 대부분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알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14)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금배정 기준은 업체신청액, 지원한도액, 가배정액 및 배정 상한액 범위 내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원한도액을 '업체 원료수매계획량(제품별 처리능력 범위 내)×평균배정단가×80%'로 하고 있다. 업체의 연간처리능력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 실사확인을 거친 제품별 원료처리 능력을 말하며, 배정단가는 신청업체 평균 수매예정단가를 말한다. 그리고 가배정액은 '업체별 가중치×부류별 지원규모'를 말하는데, 수매계획량의 50% 이상 계약재배 업체는 가배정시 30%를 증액해 주며, 업체별 가중치 부여는 지원한도 60%, 전년도 수매실적 40%를 적용하고 있다.

반응이었다. 또는 활용한 적이 있지만 담보 능력 부족으로 항상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중 성명으로 여성으로 짐작되는 22명을 대상으로 한 문의에서 73%에 이르는 16명이 이와 같이 답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설문 대상인 소규모 가공식품 경영 여성 기업가의 다수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으로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와 큰 대조를 이뤘다. 본 설문 대상 소규모 가공식품 경영 여성 기업가는 농촌진흥청에서 2003년까지 실시한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업체에 참여한 여성들이었다. 설문대상사는 모두 53개 기업이었으며, 이 중 45개 업체 즉 84.9%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무응답 3개를 고려하면 유효응답자의 90%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규모 여성가공업자의 이 같은 인지도는 현재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의 범위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홍보 전달 수단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다만 현재 일반 기업체까지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국내산 농산물수매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에서 소규모 가공업체 모두를 포괄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예산상의 제약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 농업·농촌과 구체적 연관 속의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품산업 정책의 전반의 체계적 운영 속에서 소규모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원료농산물 수매지원 자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의 3% 수준의 금리도 보다 저렴하게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업체의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9>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일반가공업체 대상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신청·지원받은 사례이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참여 업체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다수가 일반 가공업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업체의 구체적 성격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신청업체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분되는 가공업체도 전체에서 불과 몇 개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도 동일한 업체가 매년 참여하고 있음이 확실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정보가 인터넷과 신문지상으로 널리 공지되고, 오랜 운영으로 가공기업의 정보접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보다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표 9>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업체 현황(농수산물유통공사 03~06)

지원년도	업체명	업체성격
'03년 45개 업체	(농)청양고추농산(주) 강원남부생약농협 금산천연영농조합법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진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40개 업체	일반 가공기업
'04년 51개 업체	(농)청양고추농산(주) 강원남부생약농협 금산천연영농조합법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진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46개 업체 51개 업체	일반 가공기업
'05년 64개 업체	(농)청양고추농산(주) 강원남부생약농협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 금산천연영농조합법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진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58개 업체	일반 가공기업체
'06년 75개 업체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우듬지(주) 강원남부생약농협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진영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금강유통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제주다원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청양농산(주)	농업회사법인
금산천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강화사자밭썩(영)	영농조합법인
양구농수산물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64개 업체	일반가공기업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따라서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자금운영 또는 이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보, 전달방식 등의 기회의 평등보다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를 강화한 식품산업 발전을 기초로 보다 구체화하며, 이를 통한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활용한 농촌가공식품 산업의 적극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통식품개발, 산지가공업체 등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자금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홍보·전달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등이 이들 업체들에게 실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세가공업체 또는 소규모 가공업체의 선별을 통해 현재보다 저금리로 용자를 시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10>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을 업체 성격별로 파악한 것이다. 전체 대출건수는 2004년 129건, 2005년 122건, 2006년 174건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중 가동업체가 573개였던 점과 비교하면 20~3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산자단체(협동조합)의 가공업체 중에는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2006년이 이전에 비해 대출건수가 증가한 것은 생산자단체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대출에서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도별로 동일한 대출자가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생산자단체(협동조합)가 업체수와 대출금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단위 대출 건당 지원규모도 생산자단체(협동조합)와 기타가공업체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타가공업체와 농업경영체 등의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다. 2006년의 경우 생산자단체(협동조합)는 업체수에서 37.36%, 대출액 비중에서는 72.64%를 나타내고 있다. 대출액 비중이 업체수 비중에 2배에 이르는 것은 단위 대출 건당 지원규모에서 생산자단체(협동조합)와 기타가공업체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10> 농협중앙회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대출실적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업체수	대출액	업체수	대출액	업체수	대출액
기타가공업체	31	7,002	29	3,859	46	8,216
농업경영체(영농법인)	79	15,804	71	14,782	63	10,791
생산자단체(협동조합)	19	21,631	22	33,040	65	50,470
합	129	44,437	122	51,681	174	69,477

출처 : 농협중앙회

<표 11>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예산 운영 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예산은 2005년 103,558백만원, 2006년 105,600백만원이다. 2006년 예산을 업체성격별로 구분하면, 정부지원업체에 70,000백만원, 일반가공업체 32,600백만원, 전통주류업체 3,000백만원이 배정되었다. 예산 집행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연초 가공업체에 배정된 금액이 여신 상환 등의 문제로 불용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가공 및 정부지원 수매자금 지원업체의 자금수요를 항시 파악하여 수매자금 중 불용자금 발생시 예산증액 후

적기 지원으로 예산불용을 방지하고 있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타 사업부분의 용도를 전용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2006년의 경우 4/4분기 일반가공업체 대상 예산 부족액 6,083백만원은 마늘·양파·저장용 수매자금에서 전용해 운용할 계획이다.

<표 11>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05예산		'06예산		비고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일반가공업체	27,199	32,199	30,000	32,600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통주류업체	2,305	2,305	3,000	3,000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지원업체	74,054	69,054	72,600	70,000	농협중앙회
계	103,558	103,558	105,600	105,600	

출처 : 농림부

3.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의 관계 파악의 필요성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은 음식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전통의 제조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들의 참여가 크게 주목받는 분야이다. 특히 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산업 등에서의 여성농업인 참여는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공식품 산업과 여성농업인의 관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가공식품 분야 여성농업인 참여를 밝힐 통계 자료 등 구체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내고 있지만, 성별통계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 보고는 업체명, 생산

품목, 업체구분, 경영형태, 시설규모 등의 일반 현황과 가동실적, 총매출액, 수출여부, 원료조달, 판매방법, 주요 애로사항 등을 담고 있는 운영실태 파악이 추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사업자의 성별 그리고 고용현황에서 남녀구분 확인을 덧붙인다면 여성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가하자면 애로사항에서 여성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에서 성별 통계의 접근은 단순히 여성농업인의 참여 비중 파악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가공식품 산업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참여특성의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해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주요 참여 부분은 어디인지, 사업운영의 건전성 측면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경영 가공업체는 사업규모, 시장대응 능력, 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성농업인 운영 가공업체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적극 고려하여 전통의 음식 솜씨 등 여성의 일상적 장기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올바르게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표자만의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공사업 운영의 다양한 범위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통계의 부재는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 정책에서 가공식품 산업의 육성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육성 정책의 부재로 현재까지 국내 식품산업의 대부분이 소비자의 취향을 쫓아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일반 음식료품 가공산업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있다. 농림부에서 전통식품 개발사업, 산지가공산업 육성 차원 등에서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다수의 가공업체가 제1차 농업구조조정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다른 농업정책과 마찬가지로 가공업체 지원사업 역시 규모화·효율화·생산성이 정책의 중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농업·농촌과의 충분한 연계를 갖고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 정책담당자는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

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며, 따라서 사업지원의 적격여부가 우선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가공업체 참여 자체가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본래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관계에 대한 농정 담당자의 이 같은 견해는 다음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이해가 생산중심의 농정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단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다. 현 농정의 핵심 가공지원사업 중 하나인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지원이 99년 이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며, 또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은 일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과잉 생산된 국내 농산물의 판로확보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농업·농촌과 연계한 농산물가공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정체계의 문제이다.

국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은 물론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계 속의 농산물가공사업을 아우르는 농정의 식품산업 참여는 인적·물적 네트워크에 기반 속에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가공사업 참여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가공업체 차원의 포괄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개별 농가, 농가공동, 생산자조직, 지역공동체 등의 다양한 참여 속의 산업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식품 산업의 본래적 특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전제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사업 참여를 다양한 방안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 기업 대상으로 하는 농정체계에서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기업 중심의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독특한 요구가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농업인과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계의 본래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현 농정의 미비로 인해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논점이 잠복하게 되었다는 점이 올바른 지적일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고려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농산물가공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사업 참여에서 창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여성농업인의 여건을 반영한 창업방안의 안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 설립된 기업을 중심에 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을 농산물가공사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농업인으로 한 단계 진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농업·농촌의 구체성을 전제로 한 농업인 주체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활성화 요구이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담당자도 이 같은 이해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넘어 좀 더 포괄적 개념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설화·규모화에 의한 일방적 추구가 아니라 해당 가공사업의 구체적 특성과 상품시장의 구체적 파악을 전제로 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준비와 운영이 요구된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국내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과제이다. 농업인 대상 다양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교실에서부터 기업설립 그리고 사후관리 지도에 이르는 가공지원사업의 총괄적 접근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의 진전 속에서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나. 농림부 지원 가공업체 지원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논의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서 혹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다.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계 속의 농산물가공산업·식품산업 발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체계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하는 작업이다. 농산물가공산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단지 기업적 경영만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창업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은 국내 먹을거리에 대한 남다른 기술과 일상적인 경험을 크게 필요로 하며, 섬

제한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정성스런 배려는 곧 품질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가공식품은 남성농업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이해에 가까운 산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의 제2절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육성자금지원 활용 농산물가공업체의 대부분은 1989년에서 1998년 사이에 세워졌다. 제1차 농업구조조정 기간 중에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농외소득 실현 차원에서 전개된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1999년 이후는 당시로서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제기된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한 농산물가공업체 건설이 추진되었다. 앞의 과정은 농업생산의 규모화·효율화 등이 주요 초점이었고, 농업종합자금 도입 이후는 농업의 성공가능성, 경영능력이 지원의 우선 기준이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의 농림부 지원 가공업체에서 오늘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적극적 고려로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사업과 여성농업인 관계의 끊임없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성농업인 참여 현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가공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 참여 현황의 구체적 파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중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대표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표 12>가 관련 내용으로 2005년 현재 가동 중인 573개 업체 대표자 명의를 기준으로 여성 남성 여부를 자체 판단한 것이었다.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파악으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접근이 유일한 방법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 사업체 수는 대략 1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김영옥·김이선, 2003)의 여성농업인 종사자 지위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이 자신을 농업경영주로 답한 27.7%보다는 크게 낮은 수치지만, 이를 기초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농업인 주 종사자 위치에 있는 59세 이하 여성경영주로 추정되는 8.47%(권영근 외, 2005 : 14)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참여 할당

제와 가산점 제도로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후계자의 비중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표 12>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중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대표자 비중의 추정치¹⁵⁾

품목	업태성격구분	전체 사업체 수	여성사업자	
			사업체 수	비중
김치절임류	산지일반	29	1	3.45
	전통식품	55	8	14.55
인삼류	산지일반	5	1	20.00
	전통식품	12	2	16.67
음료류	산지일반	15	1	6.67
	전통식품	41	9	21.95
장류	산지일반	14	4	28.57
	전통식품	59	14	23.73
주류	산지일반	10	0	0
	전통식품	34	2	5.88
차류	산지일반	12	3	25.00
	전통식품	48	6	12.50
축산가공	산지일반	10	0	0
	전통식품	11	0	0
한과류	산지일반	0	0	0
	전통식품	28	8	28.57
기타	산지일반	47	0	0
	전통식품	143	19	13.29
계		573	78	13.61

15) 본 자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정부지원 농산물업체의 대표자 명단을 근거로 여성임을 짐작해 분류한 추정치이다. 2006년까지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왔으며, 본 연구의 진행과 함께 향후 성별분리통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2006년까지의 전체 후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대략 8.8%로 파악되고 있다.¹⁶⁾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 가공사업체 비중 13.61%의 추정결과는 정부 지원 농산물가공업체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도에서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산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 가공사업체의 실제 비중은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술하는 바, 2003년까지 전개해온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는 전적으로 여성농업인이다.

농산물가공식품 산업의 견지에서 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은 전통의 음식문화와 큰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정성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가공식품 분야에서 여성농업인 참여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전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

품목별 참여 현황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산지일반 가공의 장류와 전통식품 개발의 한과류로 각각 28.57%의 비중으로 짐작되었다. 다음으로 차류 중 산지일반 비중 25%, 음료류 중 전통식품 비중 21.95%, 인삼류 중 산지일반 비중 20%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주류와 축산가공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축산가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은 참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산지일반과 전통식품 개발에서 차이는 품목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경향이다. 김치절임류, 주류, 음료류, 한과류 등은 전통식품 개발 영역에서 여성농업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고, 인삼류, 장류, 차류 등은 산지일반 가공 쪽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농산물가공업체의 이 같은 분류는 여성농업인 대상 가공식품 사업발전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류, 한과류 등 바로 전통의 음식문화의 사업화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가공식품 산업 정책의 방향은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의 장기를 산업화로 적극 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본 장의 제

16) 2006년 후계농업인은 78,858명이며, 이 중 여성의 비중의 6,962명이다.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적 차원의 획일적 관리를 벗어나 지역차원의 새로운 관리체계로의 정비를 통한 산지가공, 전통식품에 대한 접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산업에 대한 획일적 관리·감독이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가공사업 참여 등의 장벽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음식 만들기 등 여성농업인의 일상생활의 장기를 현실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통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장 농업·농촌 그리고 시장 여건과 농업인의 주체적 수용범위를 넘는 관리·감독, 그리고 그로 인한 시설·장비 등의 부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 같은 조치가 곧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 참여 활성화 과제에 핵심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부분 여성농업인 참여 현황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은 1990년에서 2003년까지 이어진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농촌여성 소규모 창원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은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농가의 소득증대, 공동체 의식함양의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다. 2003년 이후 농촌일감맞기 사업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성격의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 그리고 농촌일감맞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지원은 그 이전에 비해 지원규모가 크게 축소된 실정이다.

먼저 2003년 이후의 사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 중 소득원제품 품질 향상시범효과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2002년에 시작하였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선발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명품화 및 전통식품의 세계화, 농촌일감맞기사업제품의 고품질화 및 규격출하 조기정착, 제품생산농가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수취가격 제고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

완, 브랜드 개발, 홍보지원, 포장/디자인 개선(소형화···고급화···다양화),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소포장 개발, 표준출하 규격 맞춤 등으로 정리된다. 이 사업은 2002년에서 2006년 계획 포함 전체 83개 사업소를 지원했으며, 개소당 지원액은 30,000천원이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은 2006년의 계획이다. 사업목적은 농산물 생산만으로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부터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및 재촌 영농의 지속, 여성농업인 능력 활용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의 틈새시장 수요 충족,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및 세계화 기반 구축 등으로 정리된다. 사업내용은 농촌자원을 이용한 여성보유기술의 지도,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제품 생산 및 전문기술지도 강화,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추진 예산은 전국 9개 시·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개소 당 405,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된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은 그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전적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며, 소규모 자본 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농림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이 기업형 가공사업체 지향을 목표로 했다면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은 농한기 부업 등 농촌여성의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예산상의 한계 등이 관계하였지만 규모의 지향이 아닌 나름대로 농업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실제 지원규모도 8,000천원~40,000천원 범위로 비교적 소액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개소당 지원은 연도별로 소폭 인상되어 왔는데, 1994년까지 8,000천원이었다가 연도별 소폭 인상을 거듭해 2001년 이후 40,000천원으로 되었다. 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루어졌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6월 현재 농촌일감갓기 사업장 수는 모두 567개로 파악된다. 이중 국비 지원이 149개이며, 지방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418개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규모 창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과 그 연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 그리고 ‘농외소득활동 지원’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성공률의 이해이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여성일감맞기 사업장의 2003년 기준 가동률은 전체의 85.9%이며, 그 중 자립경영·확대발전 등의 시야로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장이 66.5%에 이른다(김복규, 2006 ; 33). 앞 절에서 사후관리 해제를 포함한 농림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 중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573개로 전체의 51.71%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물론 농림부 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도 10년 기간의 관리해제를 제외한 범위에서 가동률은 84.3%에 이른다는 점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3> 농촌일감맞기 창업지원 사업장 수

연도	90	95	00	03. 6
국비사업	5	38	105	149
지방사업	11	164	351	418
계	16	202	456	567

출처 : 농촌진흥청

<표 14>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 운영상태

구분	보육경영	자립경영	확대발전	중도포기	계
사업량(%)	110(19.4)	251(44.3)	126(22.2)	80(14.1)	567(100)
		377(66.5)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은 초기 김치, 도토리묵, 메주, 말린 나물 등 가정과 지역단위 생산농산물의 단순가공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현재는 농가단위에서 생산가능한 대부분의 가공식품류를 포함하며, 천연염색, 삼베가공 등 특산품가공과 생활잡화 등의 비식품류까지 범위로까지 확장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장갑 등의 임가공까지 행해지고 있다. 전체 생산품목 중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쪽이 88.9%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의 이 같은 전개는 전통식품과 향토음식 등의 분야 가공지원 사업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될 부분이다.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어져온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사업’과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의 성공적 전개와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법조문에서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은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법조문의 확대해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 속의 농촌가공사업의 새로운 구상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등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의 전개를 농산물가공지원과 연계 속에 구체적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 3 장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는 현행 농정과 향후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을 기초로 한 식품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상을 구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가 기 설립된 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 대한 이해가 중심인 성별영향평가의 이해가 표면화될 여지가 크지 않다. 농림부 정책담당자 및 관련 조직의 사업담당자가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대개가 기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구분보다 사업적격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서비스 역시 남녀에게 모두 균등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 정책담당자의 이 같은 견해는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관한 제한된 시야에서 오히려 자연스런 것일 수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대표성을 가진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신청대상이 기업이며, 또한 신청자격이 국내산 농산물 수매실적과 대출금 상환능력 평가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현행 농정의 구체적 사업범위에 그치지보다 향후 가공지원사업의 새로운 추진 과제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되어 있고, 기업인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접촉 공간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발전은 다양한 범위에서 여성농업인과의 관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농업인 참여를 위한 창업교육 과정의 개설, 전통식품·향토음식 등 지역구체성에 기반 한 창업아이템의 제공, 가공식품 기업의 경영지도와 사후관리,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설지원 등으로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속에서 자연인으로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이 배

제되고 있는 자체가 현 사업의 문제점이며, 대표적 성별영향평가의 논점이 될 부분이다.

한편 현행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이 같은 전개는 지금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가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광의적 개념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개되고 있는 현실의 개혁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전개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농산물가공사업 참여를 위한 창업교실 마련 등 교육과정의 개설이다. 농산물가공사업 교육자체로의 특화도 가능하지만 농정의 기존 교육사업에서 농산물가공사업 등을 적극 포괄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농산물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산업 등의 유형별 분류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주요 참여 범위가 어디인지 또한 여성농업인이 어떤 방안으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지 등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논점은 단순 창업과 그 결과로서 기업활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농산물산지가공산업 활성화를 기초로 한 일자리 확보, 사회·경제적 대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관계를 포함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구조적 차별 또는 관습적 차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이 같은 진행은 앞에서 설명한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 농업인 중심의 가공사업의 새로운 전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이에 대한 원론적 지적에 그칠 뿐이며,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이기도 하다.

2. 지표의 근거·내용 및 분석 지침

본 연구의 목적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그에 병행하여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절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표에서 부

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담당자의 여성농업인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시행의 인지도 정도이다. 지표는 정책 입안 및 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 9개와 세부 항목 31개로 구성하였다.

가. 정책입안·결정단계

정책입안·결정단계는 <표 1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양성평등목표와 정책수단의 확인’, ‘정책입안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정책의 성별영향예측’ 등 4개의 주요 항목과 1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입안·결정단계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정책기획에서 성별영향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비한 시정 노력을 기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의 인지여부와 담당 공무원의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교육 참여여부를 함께 묻고 있다.

<표 15>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정책입안·결정단계)

주요 항목	세부 평가 항목
1.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정책의 성별 관련성 고려여부 여성 요구의 반영여부 성별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여부
2. 양성평등의 목표와 정책 수단 확인	정책의 성 인지적 목표 포함여부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존재여부 성 주류화 정책의 인지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인지여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인지여부 담당공무원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교육 참여여부
3. 정책 입안과정에서 양성평등 참여	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정책의 자문위원회에서 여성비율 젠더전문가 의견수렴여부
4.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성별요구조사 실시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

①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부분은 정책의 성별 관련성 고려여부, 여성요구의 반영여부, 성별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여부의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이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를 문의한다. 오늘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WTO체제 출범 전후시기에 국내산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증대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한 거래 등의 언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정책의 도입과정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를 알아본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중 특히 식품가공 분야는 음식문화, 향토음식, 고향의 맛 등 전통의 식생활과 큰 연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상의 식생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부지런함, 세심함이 곧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일상의 음식솜씨 그리고 대대손손 내려온 음식문화가 아이디어가 산업화가 되어 큰 성공을 거둔 예도 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산업 육성에는 일반 음식료품 가공산업과 차별적인 여성농업인의 독특한 요구를 적극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과 차별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정치·사회·제도·문화·관습 등의 차이에 따른 가공식품 산업의 접근 방법에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이에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기획단계에서 이 같은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알아본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전통의 음식문화와 큰 관련을 갖는 식품가공 산업의 특성이 주는 자연스런 이해라 할 수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 참여 식품가공 산업 분야가 사업의 안정화에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에서 성별 분리통계의 활용은 이 같은 전망이 실제인지와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요

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의 정책기획 및 집행과정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젠더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통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통계가 마련되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향후 성별 통계의 생산·활용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며, 그 취득 방법도 함께 논의해 본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격에 비춰 성별통계가 담아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② 양성평등의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양성평등의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은 양성평등 계획 및 방향에 부합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의 성 인지적 목표 포함여부,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존재여부, 성 주류화 정책의 인지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인지여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인지여부, 담당공무원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교육 참여여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정책의 성인지적 목표 포함여부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목표가 여성과 남성의 젠더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실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존재여부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젠더에 기초한 여성농업인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다. 여성농업인의 이해가 담겨져 있다면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향후 이를 새롭게 정비할 정책적 의지도 함께 살펴본다. 나아가 새로운 정책적 정비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과 정책 시행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다.

성주류화 정책의 인지여부는 정책 담당자 또는 집행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기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로 인한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관련 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주류화 정책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6개 부처에 여성정책과 등이 신설되었으며, 특히 농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성주류화 정책 속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 담당자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성별영향평가의 인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젠더의 이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인지여부는 2001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과정의 제1단계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과 함께 2006년 이후 시행중인 제2단계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해를 문의하는 내용이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것이다. 동 법률에 의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및 광역자치체장(시·도지사)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 담당자 등이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이해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검토에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서 고려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담당공무원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교육 참여여부의 확인은 담당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양성평등 지향의 성주류화 정책 자체가 정책 담당자의 이해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양성평등 교육의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수용의사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고자 한다.

③정책 입안과정에서 양성평등 참여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 속에 성별영향이 올바르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세부평가 항목으로는 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여성비율, 젠더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등으로 나누고 있다.

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여부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정책입안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두고 있다면 해당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찾아보고, 성별영향의 올바른 반응을 위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성별영향의 올바른 반응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의향을 물어본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이 실제 얼마인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위원비율 30% 이상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7년 목표율 38%에 견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젠더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젠더문제에 대한 논의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젠더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반영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반영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④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를 정책입안 단계에서 사전 예측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다.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면 그 해결대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문의한다. 세부평가항목으로는 성별요구조사 실시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 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로 구분한다.

성별요구조사 실시여부는 농수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입안·시행 과정에서 젠더문제에 기초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별도로 조사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사방법은 무엇인가를 문의한다. 실시한 사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젠더문제를 올바르게 반영할 의향은 없는가를 확인한다.

성별요구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입안·시행과정에서 성별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이가 보였는가와 차이 정도는 무엇인가를 문의한다.

성별요구에서 격차 존재 시 대안마련 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입안·시행과정에서 젠더문제에 기초한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차이를 보였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대안을 마련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나.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의 주요 항목과 그에 따른 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정책집행단계)

단계	주요 항목	세부 평가 항목
<2단계> 정책 집행	1.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정보의 홍보방법 여성의 정보 접근성 고려 여부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법 수립여부
	2.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	여성의 요구와 역할 인식 성 인지적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

정책집행 단계는 실질적인 정책집행 과정에서 양성평등 요구의 실현정도 또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이다. 이에 세부항목은 정보의 홍보방법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고려,

성별의 차이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법 수립여부, 여성의 요구와 역할인식, 성인지적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편성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졌다.

①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여성과 남성은 직접적 차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역시 여성과 남성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시 즉, 젠더문제의 올바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 결과적인 측면에서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사업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을 기하였는지 등을 문의하는 내용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정보의 홍보방법, 여성의 정보 접근성 고려여부,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법 수립여부 등을 포함한다.

정보의 홍보방법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전달이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지를 알아본다. 정책 대상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 또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현재의 홍보방법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차별없이 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인지를 살펴본다.

여성의 정보 접근성 고려여부는 정책 서비스 전달방식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의 차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성에 대한 홍보·정보전달이 젠더문제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시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법 수립여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 어떤 다른 전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홍보 및 전달방법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살펴본다.

②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젠더문제에 기초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세부 주요항목으로는 여성의 요구와 역할인식, 성인지적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성의 요구와 역할 인식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젠더문제에 기초해 여성농업인의 요구와 역할을 전제로 마련되었는지 알아본다. 젠더문제에 기초한 설별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는 여성농업인 목표달성 또는 참여증가를 예상한 성별 예산편성이 마련되었는가. 마련되었다면 그 규모는 전체 예산에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등을 알아본다.

성인지적 예산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 편차를 고려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집행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성별 편차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 실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등의 확인과정이다.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여성의 독특한 요구에 따른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다. 정책평가단계

정책평가단계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는가. 평가하였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들이 정책의 입안·집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평가지표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정책 성과 및 영향’,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의 3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항목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의 초점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며, 정책의 개선방향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양적·질적 개선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표 17>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정책평가단계)

단계	주요 항목	세부 평가 항목
<3단계> 정책 평가	1.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수혜정도 파악여부 성별 만족도 파악 여부 성별수혜 및 만족도 격차 확인시 원인파악 및 대책 수립여부
	2. 성별정책성과 및 영향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 성-고정관념 완화에 기여
	3.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	형평성증진을 위한 개선책마련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포함여부 담당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결과의 전달 및 교육 여부

①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성별수혜정도 파악여부, 성별 만족도 파악여부, 성별 수혜 및 만족도 격차 확인 시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여부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수혜정도 파악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 수혜정도를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성별 수혜정도를 파악했다면 그 차이가 있었는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농림부 등의 사업과 별개로 산지가공사업 참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함께 파악한다.

성별만족도 파악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정책만족도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수혜자가 사업의 지속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업 참여에 긍정적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성별수혜 및 만족도 격차 확인 시 원인파악 및 대책수립여부는 성별 수혜 및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면 정책집행자들의 그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②성별정책성과 및 영향

성별정책성과 및 영향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여성과 남성의 참여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해소방안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세부평가 항목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기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여, 성 고정관념 완화에 대한 기여로 구분한다.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기여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농가소득 증대 기여 등과 함께 양성평등 실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결과를 여성지위향상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지를 정책부분의 고려와 수혜자 대상 설문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여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집행결과가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양성평등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가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등이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성-고정관념 완화에 대한 기여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시행이 가부장적 질서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차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과정이다.

③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은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포함여부, 담당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결과의 전달 및 교육여부 등으로 나뉜다.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결과에서 성별격차가 존재한다면 그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설별 격차가 존재한다면 양성의 형평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격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할 별도의 예산이 준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향후 마련할 의사는 어떠한가도 문의한다.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포함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평가 결과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자료에 성별영향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담당 공무원에게 성별영향분석 결과의 전달 및 교육 여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결과로서 나타난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집행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3. 분석결과

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개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담당자의 심층면접, 농산물가공사업 참여 여성농업인 방문 심층면접 및 전화설문을 이용하였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로 진행하지만,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범위의 한계로 인해 여성 가공업자 대상 실제의 성별영향평가 질의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제한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 핵심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육성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도 가공식품 사업가로서 농업인 등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은 최근 연도에는 연간 5개 이하의 사업이 추진되어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심층면접은 농림부 정책담당 1인(식품산업과 정책담당),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담당 농수산물유통공사 담당 팀장 1인, 농협중앙회 담당 과장 1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지표 및 분석지침에 근거한 설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만 농림부는 현 단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포괄적 범위에서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을 병행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농림부와 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의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은 현재의 농정이 제1차 산업범위의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전제로 향후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발전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발전과제 속에 제기될 성별영향평가와 대응과제를 간략히 점검하였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 여성의 조사는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생협연합회, 두레연합회, 한살림 등에 유기농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여성가공식품업자와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중 대표자 명의가 여성농업인이 가공식품 회사를 대상으로 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의 주요 문의 사항은 가공식품 사업의 참여 동기에서 개선과제, 가공지원정책의 요구사항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질문 마지막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질문으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이해를 문의하였다. 심층면접 기간은 2006년 11월 20일~12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많은 문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층면접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여성 기업가는 22명이었다. 심층면접의 경우 학력, 연령 등의 사회·인구적 특징에 대한 일률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질의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설문지 정형을 갖춘 전화설문을 같은 기간에 함께 추진하였다. 대상은 2003년까지 실시된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 참여 여성농업인이었다. 이 같은 대상의 선정은 통상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 정부지원 가공업체 등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에 비해 소규모 가공업

체의 전달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여성농업인의 창업 그리고 기업 활동의 문제를 함께 진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공식품 사업의 참여동기, 가공식품 사업 참여 후 좋아진 점, 가공식품 사업 참여에서 어려운 점 그리고 가공식품 사업 업무에서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등이 설문문의 주요 내용이다.

전화설문의 이 같은 전개는 현재의 농정이 갖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한계 때문이다. 가공식품 사업 참여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범위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의 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으로 위해 어떤 정책제시가 필요한가를 찾고, 이를 정책에서 반영해 줄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설문은 2006년 12월 1일~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설문 진행은 준비된 설문지를 토대로 한 전화설문이 중심이었으나, 가공사업 참여자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전달받기 위해 개인별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전화설문 가능시간이 저녁으로 제한되고, 설문자 별 대화시간이 길어 전체 유효 설문은 53개로 정리되었다. 전화설문 참여 여성농업인 소규모 가공업자의 평균 연령은 51.7세(41~65세)였으며, 농사경력은 24.7년(귀농자 포함 7~40년)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1.5%의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 37.7%의 20명, 전문대 이상 졸업 5명, 초등학교 졸업 4명 그리고 무응답이 2명이었다. 사업체의 운영특성은 개별사업자가 62.26%의 3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영농조합법인이 20.75%의 11개 업체, 농업회사법인이 5.66%의 3개를 차지했다. 사업체 운영현황을 알 수 없다는 응답이 6개 있었는데, 사업 대표직 또는 회장직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 정책입안·결정단계

정책입안·결정단계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의 입안·시행과

정에서 정책의 성별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왔으며,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
금 등은 성인지적 목표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표 18> 정책입안·결정단계 분석결과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 근거
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성별 관련성 고려여부 ▶여성요구의 반영여부 ▶성별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 지 못함. -고려하지 않음. -구분관리의 필요성을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향후 조사에서 이를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담당자 인터뷰
양성평등의 목표와 정책 수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성 인지적 목표 포함 여부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존재여부 ▶성 주류화 정책의 인지여부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인지여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인지여부 ▶담당공무원 성 주류화 및 양 성평 등 교육 참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대상 아님. -존재하지 않음.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이 아니라고 판단함.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대체적 범위에서 인지하고 있음. -참여경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정책입안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정책의 자문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젠더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당연직 8명 중 0명, 위촉직 12명 중 4명 -수렴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요구조사 실시 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가 존재하 는지 여부 ▶성별요구에서 격차 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요구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함. “ -향후, 조사에 포함하고자 하 나 여성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젠더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촉직 전문위원의 경우 12명 중 4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그 주요 사업인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 등에 대해서는 성별 요구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향후 조사에서 성별요구 등을 조사에 포함할 계획이 있음을 답했다.

①정책의 성별관련성 파악

▶ 정책의 성별 관련성 고려여부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원료구매자금을 포함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입안·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성별 관련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원료구매자금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가의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담당자는 지금까지 농정의 중심이 제1차 산업의 농산물생산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는 점의 확인과 함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으로 지적했다. 우선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범위가 농산물가공육성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구매자금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본래적인 지향이 가공식품 산업의 창업 준비에서 향후 소비에 이르는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사업 위상에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제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과 식품산업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공식품 기업설립 또는 기 설립 사업체에 대한 원료농산물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더 확장된 범위에서 전통가공식품의 홍보·판촉 활동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한된 사업 위상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원료구매자금 지원은

가공식품업체 등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며, 수매실적과 대출 희망자의 담보력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별 관련성을 가질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자금 상환능력과 국내산 농산물 수매실적만 갖추고 있다면 모든 신청기업에게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의 경영평가 등이 참고 사항일 뿐 대표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등의 구분은 전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의 지원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 설립 기업체 중심의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공식품 기업의 창업 준비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도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규정으로 성별영향평가 접근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체계 속에 또는 현재의 분리된 새로운 사업이 요구된다는 입장이었다.

▶여성요구의 반영여부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입안·시행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대상에 들지 못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준비과정, 참여과정, 시장대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식품산업의 적극적 견인이라는 농정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농업인 기업가에 대한 우선지원의 성격보다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포함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전체에서 여성농업인 창업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국내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수매하고자 하는 모든 가공식품 기업에 열려있는 자금이며, 성별 차등이 주어질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 제도의 지원대상자 선정 순위에서 여성농업인 경영 식품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등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필요성도 없다는 반응이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한 성별통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여성농업인 기업 식품기업의 사업 안정성 등의 근거자료가 마련된다면 여성 기업인 우선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의 의견에는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통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예산이 보다 커질 필요가 있고, 더불어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도 우선순위의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점수제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 가공업체의 포괄하는 범위와 달리 산지가공식품개발, 전통식품 개발 쪽으로 특화된 자금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이해이다.

▶성별 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여부

농림부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련 통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연도별로 수집·작성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육성지원 대상업체 중심의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와 『농산물가공공장현황』이 있다. 연례 보고서 형식의 책자로 발행되는 이 통계는 농산물가공육성지원 대상업체 들의 일반현황과 운영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방법은 개별 업체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 전체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책자에 소개되는 내용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품목, 지원규모, 시설규모 등이다. 그러나 개별 단위의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대표자의 성별 유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조사체계로 해당 가공식품 기업주의 성별을 정확히 구분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통계는 사업 주무를 보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운영에서 성별통계가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로는 성별통계를 모을 방안이 없다.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통계가 마련되지 못했으며, 그 필요성에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양성평등의 파악 등 남녀 성별구분보다 사업지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서의 필요

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반응이다. 다만 농림부 정책 담당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가공식품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타 농업분야보다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높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향후 성별분리 통계를 수집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전체 가공식품산업에서 성별분리 통계를 갖추는 것은 농림부의 관할범위 밖이며, 따라서 농산물가공육성지원 대상업체의 운영실태 파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반응이다.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 보고에서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통계는 단지 대표자의 성별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개인회사가 아니라면 임원 수를 성별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산지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의 경우라면 고용현황에서 여성의 비율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대표자, 임원, 고용현황의 성별과약과 생산품목, 업체구분, 사업전망 등의 연관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

여성농업인이 가공식품 산업 진출이 활발할 것이다. 가공식품 산업에서 여성이 사업운영에 훨씬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는 여성기업인 운영 가공식품 사업체의 운영이 보다 건설할 것이다 등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성별 통계를 활용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사업규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시장접근전략,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나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둘 문제이다.

현재로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별 통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이 성별에 무관하게 자금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국내 농산물 수매를 조건으로 한 용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 제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이 아주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성별과 무관한 현재의 조건을 대변해 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양측의 대출건수를 모두 합쳐도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출자 중 상당수는 매년 동일한 업체이며, 또한 생산자단체(협동조합)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성별통계 마련은 단순히 여성농업인 참여 진작에 머무를 문제가 아니며, 본 자금이 농산물가공식품 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원장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상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②양성평등의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 정책의 성 인지적 목표 포함 여부

농림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등에서 성인지적 목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함대상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 정책담당자의 이 같은 견해와 정책 현실은 현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갖는 근본적 한계와 관련된다 할 수 있다. 현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 속의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의 종합적 발전구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비로소 가공식품 사업을 포괄한 식품산업 전반을 농정에서 아우르고자하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고, 그 연장에서 젠더문제가 새롭게 자리 잡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을 뿐이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젠더문제 포함은 국내 농업·농촌과 연계된 새로운 가공식품 산업의 육성 속에 새롭게 출발할 내용들이다.

이상의 조건에서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 그리고 그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올바르게 담는데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대표적 농산물가공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것 중 하나인 농산물가공지원육성자금은 시설지원 중심의 운영이기는 하지만 대개가 제1단계 농업구조개선 시기에 주로 지원·설치된 것들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육성자금이 UR·WTO체제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식품산업 발전의 전반적 계획이기 보다는 당시 농업정책을 배경으로 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부업 창출 등의 소극적 방향에서 검토되었을 뿐이었다. 산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규모화 중심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중심이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여건에서 젠더문제 나아가 농업발전의 실제적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농산물가공공장 경영자에게 국내산 농산물 구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다. 농산물가공업체의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 도모 그리고

동시에 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국내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의 지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 지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 속에 성출하기 농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자체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의 구체적 도구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한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의 젠더문제화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존재여부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없다면 향후 법제화 방안, 조직구성 방안, 프로그램 개발여건 조성 등 여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역시 ‘아니다’로 응답했다. 농림부 정책담당자의 이 같은 답변은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이 갖는 다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식품산업육성법 등의 제정 움직임의 구체화 속에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정에서 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법률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림부의 실제적 준비부족과 관련 부처와의 이해 조정 등의 문제가 남아 아직 미해결 상황으로 있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현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련 법률 중 가장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다. 이 법률은 산지가공사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등의 지원에 대한 직접적 명시를 통해 일반 음식료품 가공식품 산업과 구분된 농식품 가공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 축산물가공처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낙농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검역법, 농작물재해보상법 등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어느 법률, 어느 조항에도 젠더문제 관련한 여성농업인의 이해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관련 시행지침에서도 젠더문제에 기초한 여성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농업발전의 별도 주체로 보기보다 가족농 또는 농업인의 포괄적 개념에 포함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이 별도의 시행지침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역시 여성농업인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대상에서도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등에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활용이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의 여성농업인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여성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정비는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노력 등의 취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식품산업 영역은 특별한 정책적 방향없이 단지 소비자의 이해에 기초해 발전해 성장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현재의 국내 식품산업은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 부족 속에 일반 음식료품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경향이 있다.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움직임 등도 이 같은 현재의 식품산업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공식품 산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파악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관련 사업지침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적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관련 법·시행령 및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가공식품 산업에서 여성농업인 역할의 구체적 해명을 통해 정책과 지원방안을 찾는 노력을 동시에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지원의 명시가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의 직접적 명시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에서 산지가공과 전통식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가공식품 산업의 특성상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참여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료조달, 인력활용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지역과 큰 연관을 갖는 소규모 가공식품산업육성방안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정책 시행지침에 반영해 농산

물가공원료 지원 등 구체적 범위의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실제적 활용에 당도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내 농업·농촌과 관련한 농산물가공산업지원은 기 설립 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 대상 다양한 교육 사업, 인력육성, 인적자원개발 계획 등에서부터 가공식품 산업의 창업에서 성공적 판매, 사업발전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농림부 인력육성, 인적자원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성주류화 정책의 인지여부

성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에 기초한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을 의미한다. 정책상 직접적 차별을 명시하지 않아도 가부장적 질서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관행·관습으로 결과적인 양성불평등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성주류화 정책은 정책수단으로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다. 농업·농촌에서의 성주류화 정책은 남성 중심으로 편재되고, 구조적으로 정착되어온 정책수단 또는 사회의 관습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 정책 담당자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 담당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주류화 정책의 인지 여부 설문에서 ‘알고 있다’, 또는 ‘보통이다’의 응답을 했다. 농림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서 여성정책과 등 여성정책담당 관제를 실시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러나 성주류화 정책의 이 같은 인지도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공지원사업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관련성에는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기 설립 가공식품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자체가 융자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성차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간접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공식품 참여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은 이미 그 정도의 사회적 차별을 충분히 극복한 위치에 있다는 이해도 함께하고 있다. 농림부 정책 담당자는 성주류화

정책의 인지 속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지식은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1차 산업 중심의 농정에서 가공식품 산업을 포괄하는 식품산업 전반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구체성이 파악될 수 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성주류화 정책의 관점에서 이 부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인지여부

농림부 정책담당자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사업담당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규정 즉,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의 질의에 ‘모른다’고 응답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분석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감을 표했다.

그리고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또는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한계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함께 나타내었다. 특히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시행은 기 설립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범위의 제한이 있지만 현재의 사업 서비스 및 재원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해를 함께 갖고 있었다.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인지여부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근거로 농림부 여성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사업 담당은 ‘보통이다’에 답했다. 그리고 동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농림부 기본 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해야 됨을 알고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른다’고 응답했다.¹⁷⁾

이상의 응답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추진은 물론 농정의 다양한 사업체계와의 연관을 가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향후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농정에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위상과 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 성 주류화 및 양성평 등 교육 참여여부

농림부 정책담당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담당자는 모두 성주류화 및 양성평 등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 및 양성평등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농산물가공 지원사업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사업이 갖는 특성의 한계로 인해 관련 교육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를 보였다.

③정책입안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정책의 자문위원회 운영여부

▶정책의 자문위원회에서 여성비율

▶젠더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농림부 정책 담당자는 농산물가공지업사업 운영과 관계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는 당연직 8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당연직 8명중 0명, 위촉직 12명 중 4명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직 만을 기준으로 할 때 30%가 넘는 수치이며, 이를 통해

17)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8. 4>

젠더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나름대로 젠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책자문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젠더의견이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실제 운영 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여 여성이 실제 젠더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안건이 정책 입안·시행과정에서 젠더문제를 논의할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는 이 2가지를 모두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 참여 여성은 소비자단체,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이다. 그리고 논의 안건이 정책의 입안·시행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전통가공식품 명인 지정 등 주어진 사업의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회의도 연간 2~3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정책자문위원회는 존재하지만 젠더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담는 쪽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위원회로서의 본래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거듭 지적하고 있는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근본 체계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산업의 총괄적 관리 및 지위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속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자체의 역할이 제한적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가 농산물가공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위상을 갖기에는 본래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④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 ▶성별요구조사 실시 여부
- ▶성별요구에서 격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성별요구에서 격차 존재 시 대안 마련 여부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에 기초하여 성별요구 조사, 성별요구 격차의 존재 여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제한적 질문이지만 역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었다. 해당 서비스 또는 재원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달되는가의 질문에 농림부는 ‘그렇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었다.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상 농정의 다른 분야보다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월등할 것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이는 농산물가공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가게에서 전수되어오던 전통의 음식문화를 사업화하거나 여성의 일상적 장기가 사업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이해이다. 이 같은 의견을 전제로 내년 이후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성별요구 조사 등을 실시해 볼 의향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요구조사는 현재의 기업가에 대한 성별요구 이전에 여성농업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업의 출발점에서 해당 사업 성격의 충분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여성인적 자원개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지에서 농정에서 실시 중인 교육 계획이 제1차 산업 중심의 틀을 벗어나 가공식품 부분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 가공식품 사업과 관련 판매업 등으로의 여성농업인의 진출의사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다.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 단계는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와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2개의 주요 항목과 거기에 따른 7개의 세부평가 지표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정책집행단계의 분석결과는 <표 19>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표 19> 정책집행단계 분석결과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 근거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홍보방법 ▶여성의 정보 접근성 고려 여부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 방법 수립 여부 ▶성별 홍보전달의 공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기업 전달, 신문광고, 인터넷 등 활용 -접근성 고려하지 않음. -성별에 따른 고려는 필요하지 않음. -소규모 가공 참여자에 대한 전달력의 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담당자 인터뷰 -관련 공고내용 -농업인 설문조사
성 인지적 예산 편성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요구와 역할 인식 ▶성 인지적 예산 편성·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없음. -별도의 예산편성 고려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①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정보의 홍보방법

성주류화에 기초한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은 정책정보 전달의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남성은 정보 전달에서 직접적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가부장적 질서 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정보 전달은 가부장적 질서로 오랜 기간 고착되어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필요로 한다.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다수는 가공업자 또는 농업인을 직접적 대상으로하기 보다는 산지가공산업, 전통식개발 등에 대한 홍보 등이 중심을 이루면서, 특별히 젠더문제를 중심에 둘 논의가 많지 않다. 다만 농림부지원 가공업체 지원사업 사업 등이 농업종합자금의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이 부분에 관해서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농업종합자금 홍보는 농림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전문지 등의 신문광고, 입간판 리플렛 그리고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농업종합자금의 일반적 홍보가 중심이 되면서 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시설지원 등은 특별히 부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정보는 농림부 홈페이지의 농림사업지침서 상에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 정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1차로 전달되고 있다. 그 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업전문지 등 신문광고, 인터넷 게시, 협회 및 단체안내, 해당업체 방문안내 등의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다.

- ▶여성의 정보 접근성 고려 여부
-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법 수립 여부
- ▶성별 홍보전달의 공평성

농업종합자금 정보가 성별로 공평하게 전달되는가의 논의는 선행 연구(권영근 외, 2005)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농업종합자금의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성농업인의 60%가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해왔다. 전달매체의 공평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종합자금 전달에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농업종합자금 정보취득의 주요 경로가 농협 45.0%, 시·군청 15.0%, 농업기술센터 13.4%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온라인이나 일반 매체보다는 농업종합자금 정보가 사회적 관계로 전달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하며, 이 같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강화 등 홍보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중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초점을 맞춰 관련 정보가 양성모두에 공평하게 전달되는가의 질의에 대해 농림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업 수혜대상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에서 성별 구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사업대상자가 본래 가공식품 사업자이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차

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이해이다. 가공식품 사업자 자체에 성별구분이 불필요하며, 따라서 성별 공평성도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성별에 따른 홍보 및 전달방식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도 없으며,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해이다.

그러나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응답은 현장의 여성 가공식품 기업가 등 특정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정부지원 가공식품 업체와 생활협동조합 등에 유기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여성 기업가의 경우는 설문대상 22개 업체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용자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담보물을 설정할 방법이 없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다수 업체는 이미 가공공장 건설 등으로 건물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신청시기 등에 항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매해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최소 정부지원 가공업자 대상에서 성별로의 정보 접근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소규모 식품 가공업자로 활약 중인 여성농업인으로 분류되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 참여 기업가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인지도는 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여성일감갓기 출신 여성사업자 중에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명, 9.4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이 45명, 84.91%에 이르렀으며, 무응답은 3명, 5.66%였다. 농촌진흥청 시행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자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한 이 같은 인지도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전달에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 참여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과도 연계를 갖고 있다. 또한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여성 활동가라는 특징도 갖는다. 따라서 이들 여성 기업가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 전달이 나름의 폐쇄성을 갖고 있고, 이에 여성농업인의

접근기회가 올바르게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농촌여성일감갓기 출신 여성 사업자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인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알고 있음	5	9.43
모름	45	84.91
무응답	3	5.66
합계	53	100.00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을 통한 가공사업 참여자의 응답임.

<표 21>은 농촌여성일감갓기 출신 여성사업자에게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이다. 24개 사업체, 45.28%가 제도자체를 몰라서 이용을 못했다는 응답이었으며, 27개 사업체, 50.94%가 무응답으로 나왔다. 이는 앞의 <표 20>에서의 응답의 사업 인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제도 자체를 몰랐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부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이용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 21>농촌여성일감갓기 출신 여성 사업자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신청을 못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자체자금으로 충분하다	1	1.89
담보가 없다	1	1.89
제도 자체를 몰랐다	24	45.28
무응답	27	50.94
합계	53	100.00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을 통한 가공사업 참여자의 응답임.

②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

- ▶여성의 요구와 역할 인식
- ▶성 인지적 예산 편성·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
-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중점을 두고, 여성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별예산의 편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농림부 정책담당자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사업 담당자는 ‘없다’라고 답했다. 성 인지적 예산 편성·집행 및 모니터링 여부에 대한 질의와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여부 등의 문의 모두에서 ‘아니오’를 답하였다.

농산물가공산업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이 이 부분을 충족시킬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사업타당성(국내 농산물 구매)을 전제로 자금상환 능력을 고려해 집행되기 때문에 여성의 요구와 역할 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특별히 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성인지적 예산편성·집행 및 모니터링과 여성의 독특한 필요에 의한 추가예산 편성 등의 고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운영규정 등이 특정인을 탈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농산물수매실적과 올해 신청 액을 기초로, 자금상환 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별 예산이 마련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성농업인이 충분히 준비해 자금을 신청한다면 차별없이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 정책평가 단계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 정책성과 및 영향’,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평가지표로 하는 정책평가 단계의 성별영향평가는 <표 22>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농림부 정책 담당자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이해도 증

진 등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였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현재의 사업지원 체계를 넘어 가공식품 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농정의 새로운 포괄 속에서 찾아질 부분임을 강조했다. 농림부 정책담당자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은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은 파악하지 않고, 또한 성별차별이 없다고 보아 대책마련 계획도 없음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또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등이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었다. 그렇지만 가공사업 참여 여성농업인 다수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가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는 각종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넓어졌다는 등의 응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양성간의 불평등 개선에 일정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정책평가 단계 분석 결과

평가 지표	세부 평가 지표	조사 결과	지표활용 권고기관 조사분석 근거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 수혜정도 파악여부 ▶성별 만족도 파악 여부 ▶성별 수혜에서 차별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여부	-파악하지 않음. -파악하지 않음. -성별 차별이 없다고 보아 대책 마련 없음.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성별 정책성과 및 영향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성 고정관념 완화에 기여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 평 포함여부 ▶담당공무원에게 분석결과의 전달 및 교육 여부	-검토되고 있지 않음. “ “ “	○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①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 ▶ 성별수혜정도 파악여부
- ▶ 성별만족도 파악여부
- ▶ 성별수혜에서 차별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여부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지원 결과를 성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농림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인데 2가지 경우 모두 성별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가공식품 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별통계 관리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운영 농식품 가공업체의 운영실태를 위해 성별통계를 구축해 볼 의향임을 밝히고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정보 역시 성별통계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역시 식품기업체가 직접적 대상이기 때문에 성별분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농산물 수매를 전제로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확보할 경우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굳이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의 제2장 제3절에서 2005년 가동 중인 농림부가공지원사업 참여 업체에서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 가공식품 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13.61% 임을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06년까지의 전체 후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중 8.8%로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참여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가공식품 사업이 타 부분에 비해 여성농업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공식품 기업은 직접적인 회사설립으로 다른 부분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계농업인 참여는 자칫 가족농 범위에서 농업경영확대, 여성농업인 참여로 농업경영자금 대출 등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여성농업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족농 범위에서 배우자 남편과의 관계로 농사경영에서 항상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기업은 향후 항상적인 사업

경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농림부지원가공 지원사업 참여업체, 생활협동조합 유기식품 납품 가공업체 등 모두에서 실제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3>은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을 통해 가공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업경영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문의한 것인데, 동반 사업자 21명, 39.62%, 대외 관계 등 부문협력자 14명, 26.42%, 별 참여없음 13명, 24.53% 등에서 보듯이 여성이 사업경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인 남편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답한 경우는 1명, 1.89%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수혜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 23> 귀하의 가공사업 경영에서 배우자(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비율
별 참여없음	13	24.53
대외관계 등 부문별협력자	14	26.42
동반사업자	21	39.62
실질적인 경영자	1	1.89
배우자 없음	2	3.77
무응답	2	3.77
합계	53	100.00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을 통한 가공사업 참여자의 응답임.

현재의 조건에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성별통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제2장 제2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활용 업체는 2006년 기준 생산자 단체(협동조합)를 포함 238개 업체였으며, 그 이전 시기까지는 200개 업체를 넘지 못했다. 또한 앞의 정책집행 단계의 성별평가에서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를 통한 식품가공사업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정보전달 방법에는 성

별 차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활용이 소규모 가공업자 등의 포괄적 활용에 결과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 소규모 가공업자 등에 보다 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된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운영 개선을 통해 실제로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 참여의 건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전제 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구체화 하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수혜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별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또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서 성별수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차별원인 파악 및 대책수립 등에 대한 논의도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경우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이 특정업체에 탈락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 전년도 수매실적과 올해 신청액을 기준으로 자금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 특별한 성별 고려는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 농산물가공사업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포괄적 범위의 질문에서도 ‘없다’는 응답이 절대다수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판로확보, 경영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별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②성별정책성과 및 영향

-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 ▶성 고정관념 완화에 기여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농산물가공사업 참여 여성농업인의 응답을 살펴볼 때 가공사업 분야 참여가 나뉠대로 여성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양성평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농산물가공사업 참여 동기에 대해 가공사업 여성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대상자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사업 여성기업가들의 참여동기는 농가소득 증대 등 돈벌이 수단이 전체 응답자 75명 중 27명, 36.00%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했고, 여성농업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위해서가 12명, 16.00%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정부지원과 관계기관의 권유, 가공식품 판매경험, 장기특기 실현 외 기타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기타 의견에는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사회봉사활동의 전개, 우리콩살리기 운동,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취미생활의 사업화, 과잉농산물 처리방안 모색, 가게 전통음식 문화의 사업화, 생활개선회 모임의 자발적인 사업구상,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농산물가공사업에 대한 이러한 참여 동기들은 종합적으로 가공식품 사업 참여가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호응 속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표 24>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 참여동기

구분	빈도	비율
정부지원과 관계기관의 권유	5	6.67
농가소득 증대 등 돈벌이 수단	27	36.00
여성농업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12	16.00
장기 특기 실현을 위해	4	5.33
가공제품 판매 경험으로	5	6.67
기타	11	14.67
무응답	11	14.67
합계	75	100.00

** 전체 설문지의 합산임.

<표 25>는 농산물가공식품 사업 참여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의 설문에 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부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7명, 36.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각종 사회활동 기회가 넓어졌다가 21명의 28.00%, 농업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았다가 8명의 10.6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별히 좋은 점이 없다’와 ‘참여를 후회 한다’를 합한 부정적 견해의 응답의 합은 6명의 8.00%로 나타났다.

<표 25>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 참여이후의 변화

구분	빈도	비율
농업전문 인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8	10.67
각종 사회활동 기회가 넓어졌다.	21	28.00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27	36.00
특별히 좋은 점이 없다.	2	2.67
참여를 후회한다	4	5.33
무응답	13	17.33
합계	75	100.00

** 전체 설문 의 합산임.

설문의 이 같은 결과는 농산물가공사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성고정 관념 완화에 일정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농림부 지원 또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등으로 가공사업을 시작했지만, 대개의 응답자가 현재 단계에서는 농산물가공사업지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또는 별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알고 계시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어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있는지를 물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크게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 조건이 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펴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농촌과 연계한 가공식품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의 확립과 이를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가공사업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여성농업인 가공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농촌에서 농가소득 기여 자체가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상승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농산물가공사업 참여 후 농가소득 증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명, 66.67%가 증대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증대 중에는 조금 증대가 14명, 18.67%, 보통증대가 19명, 25.33%, 많이 증대가 17명, 22.67%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답변으로 짐작해 볼 때 통상 보통 증대는 30~40% 전후의 증가를 의미하며, 많이 증대는 2배 이상의 증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감소추세는 2명, 2.67%에 그쳤으며, 변동 없음을 답한 경우는 9명, 12.00%, 무응답은 14명, 18.67%였다.

<표 25>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 참여이후의 변화

구분	빈도	비율
변동없음	9	12.00
조금증대	14	18.67
보통증대	19	25.33
많이 증대	17	22.67
감소추세	2	2.67
무응답	14	18.67
합계	75	100.00

** 전체 설문지의 합산임.

③ 분석결과의 환류 및 개선

▶ 형평성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

농산물가공식품 산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여성농업인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여성농업인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설문대상 여성농업인은 물론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공통된 이해였다. 다만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포괄하는 새로운 범위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관련한 단일 사업의 기획과 종합이 아니라 농정 전반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농정의 주요 시책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문농업인 교육 등 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구체적 결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문농업인 교육은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능력 배양’, ‘농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사회 기반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제1차 산업의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농산물가공사업 차원의 교육훈련도 지역특성에 맞게 배치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 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다양한 교육훈련 계획과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결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당 교육훈련이 실제적인 여성농업인에게 현실적으로 효용에 닿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시간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소규모 가공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 기회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여성차별이 없는 홍보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공사업 참여 여성농업인이 이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양성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설문대상 집단이었던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 여성기업가의 정보 전달은 해당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정보 전달로 당장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 향후 전문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내년도 예산안 반영
-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포함여부
- ▶담당공무원에게 분석결과의 전달 및 교육 여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내년 예산 등에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정책담당자는 현 단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양성평등적이라는 이해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새로운 재편 속에 담겨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보고서에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담겨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이 마련될 여지가 없다.

다만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움직임 등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이를 포괄한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농림부의 최근 동향은 향후 농산물가공지원사업 부문의 여성농업인 관련 분야에도 나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사안별 개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식품산업 영역에서 사업전반을 포괄하는 속에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이 새롭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 가동 중인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중 여성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수가 다른 부분의 여성 참여율 보다 높은 13.61%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진출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기대와 실제적 역량을 적극 고려하여 창업교실에서부터 정책 단계를 밟아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육성에서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계를 기본 전제로 해야 함은 항상적으로 참고 되어야 한다.

제 4 장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창업활동 지원방안

1.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사업의 특징

가. 수작업 중심의 여성들의 섬세한 솜씨와 전통의 손맛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창업활동의 기본 특징은 전통의 먹을거리 음식문화의 상품화이다. 즉, 가정이나 지역차원에서 전수되어오던 향토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전통음식·전통식품으로 상품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창업활동은 가정과 지역에서 전수되어온 일상의 음식솜씨를 사업주체와 지역여건에 맞게 규격화·보편화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창업활동은 일반 음식료품 가공식품 산업과 달리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음식문화·전통에 관계된 주체적 여건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사업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지역이라는 공간적 여건과 사업주체에 따라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26>은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즉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가공업체를 사업별로 구분한 것이다. 김치절임류, 장류 등의 대분류지만 남성대표자와 여성대표자 간의 사업 성격별 차이가 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타를 제외한 전체에서는 김치절임류, 장류, 차류, 음료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대표자의 경우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대표자는 기타를 제외하고 장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는 음료류, 김치절임류, 차류, 한과류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장류, 한과류, 주류, 축산가공도 여성대표자와 남성대표자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류, 한과류는 여성의 상대적 비중이 큰 반면, 주류는 남성의 상대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축산가공 부분에 여성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성 기업가의 진출 부분이 기계식 공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걸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26> 2005년말 기준 가동중인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의 성격별 구분

구분	김치 절임류	인삼류	음료류	장류	주류	차류	축산 가공	한과류	기타	합
전체	84	17	56	73	44	60	21	28	190	573
	14.66	2.97	9.77	12.74	7.68	10.47	3.66	4.89	33.16	100%
남성 (추정)	75	14	46	55	42	51	21	20	171	495
	15.15	2.83	9.29	11.11	8.48	10.30	4.24	4.04	34.55	100%
여성 (추정)	9	3	10	18	2	9	0	8	19	78
	12.33	3.85	12.82	23.08	2.56	11.54	0.00	10.26	24.36	100%

출처 : 전체 통계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제공자료이며, 남성, 여성은 대표자 명의를 기준으로 자체 추정한 것임.

수제품 중심의 가공식품 부분으로의 여성기업가의 사업진출 확대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참여 기업에서도 잘 확인된다.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은 초기에는 김치, 메주 등의 수준에 머물다가 이후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어 왔다. 오늘날은 장류부분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막장, 청국장을 비롯해 한과류, 사과·배·포도·감 등을 이용한 음료류, 조청, 참기름, 들기름 등의 양념류, 두부·장아찌 등이 반찬류 그리고 잔치음식에 이르기까지 실제 식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망라되고 있다.

여성들의 섬세한 솜씨와 전통의 손맛 발굴이 농산물가공육성자금 활용 여성기업이나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을 통한 식품산업 전개의 공통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일반 음식료품 산업이 지향하는 시설중심, 기계식 작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작업 중심의 상품생산은 규모화·시설화 중심의 기계식 제품과 차별되는 여성농업인의 손맛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일반 음식료품 생산품과 구별되는 일상적인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틈새시장 전략의 요구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공간적 범위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

여성농업인 농산물가공식품 사업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사업의 전개가 바로 여성농업인을 지역발전의 주요 일원으로 세워내는 작업이다. 더불어 지역문화가치 고양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산업을 활용한 지역진흥 전략도 요청된다. 여성농업인 농산물가공식품 사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가공원료 구매를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처로의 역할, 지역 여성농업인 등의 일자리 제공에서부터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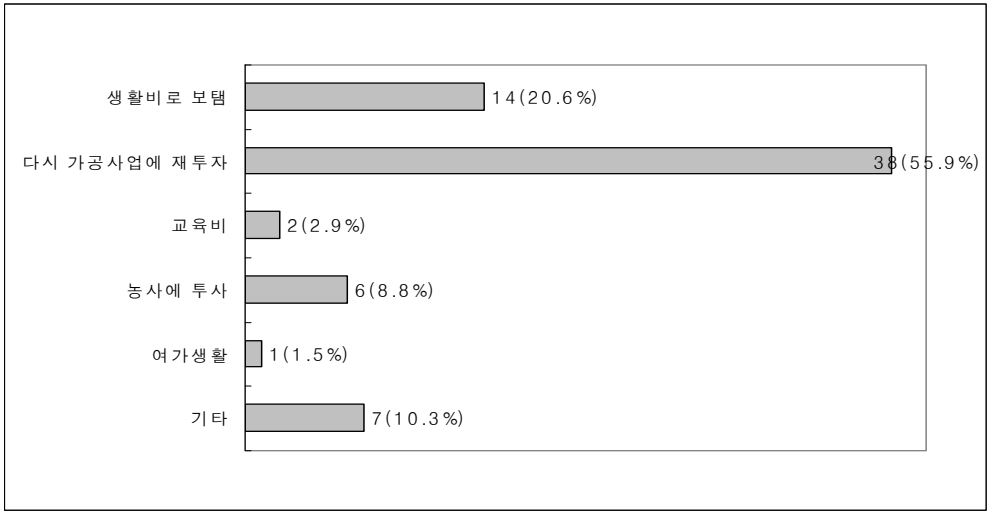
가공원료 구입처가 어디인가의 질문에서 응답 내용에 중복이 많아 이의 계량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수의 여성기업가가 자가 재배 또는 지역 내 조달이 중심임을 답하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자가 재배와 지역 내 조달이 가장 많았고, 다음 순서로 도매시장 등 시장조달 그리고 전국 대상 계약재배와 수집 등이 있었다. 자가 재배와 지역 내 조달이 중심인 것은 원료농산물의 품질,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 잉여 농산물 처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이를 택하고 있다는 응답도 여럿 있었다. 또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자가 재배, 지역 내 조달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지역 내에서 가장 풍부한 생산물을 기준으로 가공식품 생산을 기획하고, 지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를 진행했다는 응답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은 계약생산도 있었지만, 수시 순회 수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운영이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받아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가공식품 여성기업가 등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관계 기관의 협력의 작은 지원만 성사된다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역 가공식품 산업 육성 협력체 등이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여성기업가 운영 가공식품 공장의 상시 구성원 수의 규모는 조사 대상 식품기업을 기준으로 1명에서 33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지만 3~5명이 51%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상시 구성원 외에 제품 성출하기 등에 지역 여성농업인, 남성농

업인을 일용직으로 다수 활용하고 있었다. 농사여건을 고려하여 농번기에는 개별 가정에서 농사일에 전념토록 하고, 농한기 등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도 있었다. 주변 농업인 등은 농사 외 부업으로 여겨 이를 크게 반기고, 공장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음식료품 가공업체 등이 지역에 입주하더라도 주로 외부 인력을 동원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가공식품 기업 자체도 농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내 농사일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가공식품 경영과 농사와의 병행한다는 응답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 쪽이 특히 많았다. 응답자 53명 중 46명, 86.79%이 농사와 병행한다고 하였으며, 3명이 가공식품 사업 전명, 4명은 농한기 등 계절별 운영이라고 답했다. 대신 생협 등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기업과 농산물가공육성자금을 활용한 업체의 경우는 22명 중 18명, 81.82%가 가공식품 사업 전념 쪽에 있었다. 농사를 지어도 소규모로 짓는다는 응답이었다.

한편 가공식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용도를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 53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을 허용해 문의했는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60개의 응답 중 다시 가공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응답이 38개로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생활비로 보탬이 14개, 기타 7개, 농사에 투자 6개 등의 응답을 보였다. 이 같은 응답은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 운영의 지속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가 계속적으로 높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림 2>수익은 가정 내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 53명의 응답이며, 복수응답 허용임

2.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활동 요구사항

가. 가공식품 사업 신청 및 경영상의 요구

<표 27>은 가공식품 사업 여성 기업가에게 주위 여성농업인에게 가공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할 의향이 있는가를 문의한 것으로 응답자의 62.67%인 47명이 ‘예’라고 답하고 있다. ‘아니오’의 응답도 23명의 30.67명에 이르지만 대체로 가공식품 참여에 대해 긍정적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응답자가 농산물 가공지원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와 사회적 활동 기여가 많아졌다는 답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농가소득과 여성농업인의 역할확대, 지위향상 등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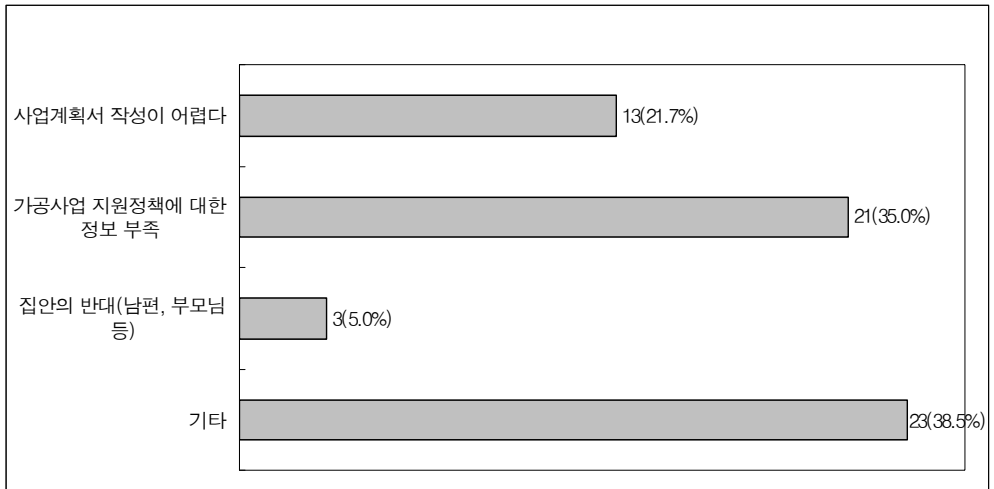
<표 27>주위 여성농업인에게 가공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빈도	비율
예	47	62.67
아니오	23	30.67
무응답	5	6.67
합계	75	100.00

* 전체 설문지의 합산임.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가공식품 사업의 많은 개선과제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가공식품 사업 신청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으로 가공식품 사업에 참여한 53명의 설문자에게 복수응답 허용으로 물었는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사업 지원정책의 정보 부족’이 60개의 응답 중 23개로 가장 많이 나왔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 사업이 내용도 빈약하지만 실제 활용에 크게 못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 지적은 ‘사업계획서 작성 어렵다’로 13개의 응답이 나왔다. 그 외 전문기술 부족, 세부적인 절차의 복잡함, 공장허가 과정 수행의 어려움, 작목반 부녀회 회원 간의 의견조정, 사업관련 기관들의 연계 부족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자도 4명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지적하는 바는 가공식품 산업 전개의 종합적 체계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장허가 과정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우는 사업지원으로 큰 뜻을 품었는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스럽고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응답자는 가공식품 창업활동 지원의 체계적 컨설팅 기관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가공식품 산업 창업 지침서 등이 마련되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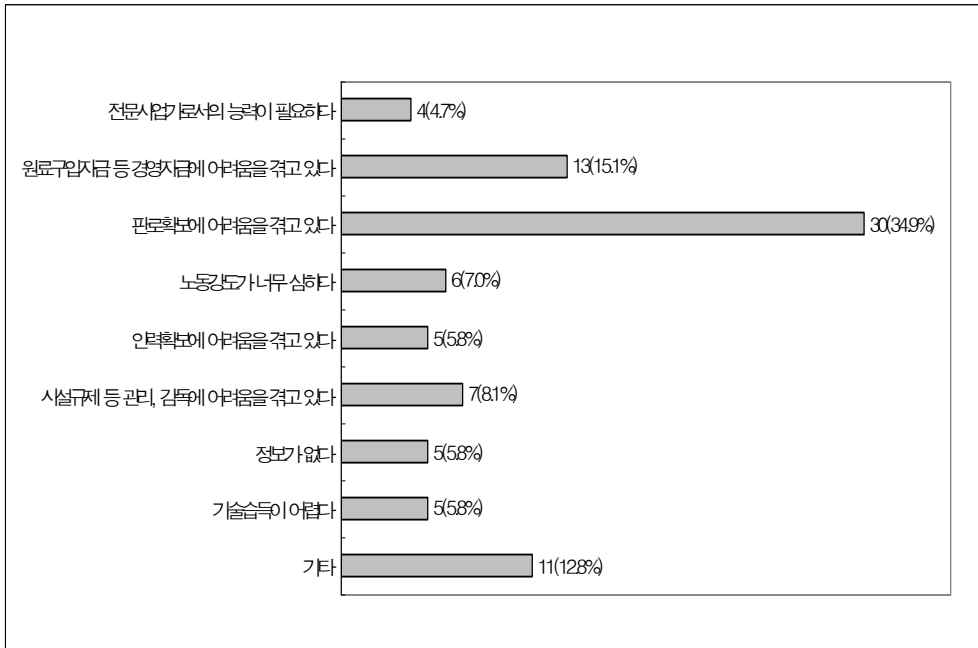
<그림 3> 가공사업 신청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 53명의 응답이며, 복수응답 허용임

가공식품 사업 참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인가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물었을 때는 86개의 응답이 나왔고, 그 중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30개로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다음 빈도수가 높은 것은 ‘원료구입자금 등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13개였다. 그 외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개 수준에서 비교적 고르게 응답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원료조달이 어렵다’, ‘상품생산 자체가 어렵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도 2명 있었다. 판매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은 농산물가공육성지원자금 활용 여성기업가심층 면접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협동조합 등에 유기가공식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사전 계약 또는 출하물량의 예측을 통한 생산을 한다는 대답과 함께 판매사업이 부진하다는 응답이 다소 적었다. 이와 같은 응답에서 가공사업 참여 여성농업인들이 판매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가공사업 참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 53명의 응답이며, 복수응답 허용임

판매사업에 대한 고충은 가공사업 참여에서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지원정책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53명의 응답자가, 복수응답으로 107개를 답했는데, ‘마케팅 능력제고가 필요하다’에 27개의 빈도수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시설지원 등 사업확장이 필요하다’ 25개, ‘기술향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19개, ‘전문 경영인으로서 교육기회를 갖고 싶다’ 17개, ‘가공사업과 연계할 여러 조직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 11개,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구입이 필요하다’ 2개 등의 빈도수를 보였다.

가공식품 산업 사업자들은 어떤 판매전략이 필요한가의 추가적 질문에 가내 수공업 차원에서 생산된 전통식품과 기계식으로 생산된 일반 음식료품 생산품이 시장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품질로서 상품 차별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전체 속에 지역차원의 특화된 시장과 상품화의 진전이 만들어 질 수 있고, 틈새시장이지만

다양한 판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다. 이에 부가적으로 농림부가 전통식품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물레방아 마크의 효용을 문의하였는데, 다수가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가 보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다. 또한 전통식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보다 구체화하여 유사상표 사용이 이루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통식품의 차별화와 판로확대에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이해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상품생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생산장려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소비자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일반 기계식 공장형 음식료품과 구분된 전통식품 산업, 즉 여성농업인의 손맛을 통한 상품개발이라는 점이 적극 홍보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통식품은 지역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초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해반영도 이러한 지역 시장의 동향과 흐름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식품 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그리고 지역의 범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발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포괄적 범위에서 전통식품의 소비자 인지도 개선, 재정적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한 기술적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등에 기초한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나. 법·제도적 개선 요구사항

가공식품 사업 참여 다수의 여성농업인은 현재의 관리·감독 중심의 법·제도가 산지가공식품, 전통식품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향토음식 산업 등은 참여자의 능력과 사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행 법·제도가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식품 가공식품 여성농업인 기업가 다수는 심층면담을 통해 현재의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 의한 관리·감독이 획일적 단일 기준에 의해 요구하는 식품위

생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 요구 등은 전통식품의 특성을 잘 못 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자기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 계획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식품산업 참여 여성기업가는 획일적 단일 기준에 의한 시설 요구는 음식료품 산업에서 대기업 주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화·시설화 중심의 일반 음식료품 가공산업과 구분되는 전통식품 자체의 독특한 요구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규모화·시설화 요구가 WTO·FTA협상 등으로 농업 피해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성과의 조급함이 부르는 과오라는 지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로 현재의 식품산업 법·제도 자체가 손맛을 이용한 다양한 가내 수공업 부분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제도와 정책방향은 참여자의 구체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음식료품과 전통식품의 통합적 관리·감독을 지양하고,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통식품의 특징에 맞는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상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이 현재적 여건의 충분한 반영과 함께 다양한 규모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 획일적인 시설과 규모의 요구 자체가 곧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산업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인 시설과 규모 요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법령은 하수도법이다.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시와 함께 시행령에서 1일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제곱미터 이상은 1t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 사용이 많은 일반 가정에서도 이에 해당할 정도이다. 또한 동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이를 소규모 가공식품 공장 등에도 모두 동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시설 문제는 수질환경 개선에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여성기업가 등의 주장은 폐수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이기 보다는 오염원이 없는 공장에서도 배출 규모만을 고려해 동일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즉, 하수도법의 적용은 실제 오염원이 없는 유기농가공식품 생산에서의 채소·과일의 단순 세척 등에 이용하는 물까지 폐수로 규정하여 배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기농 포도즙 가공시의 세척한 물과 부산물은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법률의 구속으로 폐수나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소규모 식품산업 경영에서 이의 부담을 능히 감당하기 벅찬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염없이 부산물이나, 폐수를 농업에 재이용할 수 있는 식품가공업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이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가공식품 분야는 아니지만 천연염색 가공을 하는 쪽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천연염색 공장 폐수는 공업용 염색공장의 폐수와 엄연한 차별이 필요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배수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축산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2006년 9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축산폐수 부분의 대안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같은 취지를 살피 오염원이 없는 식품가공 산업의 폐기물 또는 폐수를 자원개념으로 재해석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하수도법에서 유기가공식품 및 천연원료 활용 가공식품산업에 예외조항을 두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등에 의한 획일적 관리·감독도 향토음식의 특성을 발휘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출현이 식품공전 규정의 장애로 상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식품공전의 규정대로 식품을 제조할 시 전통의 맛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빈번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전통식품의 허용은 원료 등의 위해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을 근거로 원료를 제한하며, 따라서 전통의 손맛, 가계의 음식문화를 폭넓게 수용해 상품화의 길을 열어가는 방안을 택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유통기한도 전통식품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경우 보다 긴 유통기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적 강제에 의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간장, 된장을 유통기한의 명시 없이 냉장·냉동보관하다 상품을 모두 폐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예외조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위생상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유통기한이라는 제한적 범위의 적용이기 보다는 제품의 생산에서 합법적 소비기간 까지를 표시할 수 있는 유통기간이라는 다소 포괄적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식품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의 통일적이고, 상호협조적인 운영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김치산업 여성기업가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10회 이상 단속반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검사소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 단속의 범위가 다르더라도 시기를 상호 조정하여 단속하는 것이 현장 사업진행에 보탬이 된다는 요구이다.

3.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의 정책적 과제

가.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체계의 확립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 과제는 앞에서 살펴본 여성농업인 참여 가공식품 사업의 특징과 법·제도적 요구 사항을 기초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일반 음식료품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품산업과 차별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유인을 통한 국내 농업·농촌과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 구체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적 관심과 집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창업을 체계적으로 안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전개이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기초로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산업 교육과 향후 지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가공식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중앙부처로서 농림

부의 각종 교육사업의 새로운 재편에서부터 지역현장단위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협동조합 등의 자생적 교육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농림부 주관 농업인 교육은 사실상 제1차 산업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다. 따라서 향후 인력육성, 인적자원개발 계획 등에서 가공식품 사업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업의 전개는 식품산업과의 독자적 움직임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농림부 내 교육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책부문의 총괄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현장 단위에 이르는 가공식품 산업 컨설팅 기관의 체계적 구성·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부분은 가공식품 사업의 전문성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장 단위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률·제도·통계·시장 및 소비자 동향과약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체계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례적인 여성가공식품 기업 실태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공식품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농림부 식품산업과에서 특별 사업으로 배치해 온라인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농산물 가공식품 사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역의 구체적 조직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¹⁸⁾

가공식품 사업 창업을 위해서는 식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법률 외 공장설립과 건축, 국토관리, 농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한 많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도해줄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 같은 체계 정비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 및 소비자 동향은 가공식품 사업의 추진방향과 큰 관련을 갖는 것으로 가공식품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자리할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장 단위에서는 이를 기초로 여성농업인과의 직접적 접촉

18) 현재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이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회원제로 행하고 있어 농업인 전체의 활용 또는 현장단위와의 결합에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사안별 접근이 주가 되면서 농산물가공식품 사업 지원의 종합정보센터로의 위상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을 실천해 가는 것이다. 현장 단위는 지역범위 또는 개별 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의 참여의사를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향후 사업구상과 계획수립, 회사설립 그리고 이후의 공장건설 및 운영, 향후 시장대응 전략 등에 이르는 다양한 관계를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안내·지도기관이 요구된다. 별도의 기관 설립보다는 현 단계에서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에 대한 나름의 지원을 전개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교육과 연계할 필요도 있다.

나. 소규모 가공식품 산업 육성의 법률적 명시와 관련 제도 개선

가공식품 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 체계의 확립은 현 농정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정책 범위의 새로운 전개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등이 핵심을 이루는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기 설립 가공식품 사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교육 및 컨설팅 체계의 확립은 이를 창업준비 단계로 확장하고, 소비자·시장 동향의 구체적 파악 등을 기초로 경영지도 부문까지 넓혀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시장 동향은 현장 가공식품 사업의 생산전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의 체계적 정비는 가공식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에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교육 및 컨설팅 체계의 확보를 포함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계획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 체계의 정비도 함께 요구된다. 현재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식품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사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제19조(교육훈련등)의 ①항은 ‘농림부장관은 농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가공업자, 유통업종사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시는 역시 기 설립 가공업체의 지원 성격을 갖는 것으로 앞에서 제안하고 있는 창업준비와 과정에 필요한 교육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창업 준비 단계로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육성의 명시와 함께 여성농업인 가공산업 육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농업인 가공산업 육성의 직접적 명시보다는 이를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의 명시를 통해 여성농업인 등의 실제의 요구와 여건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가공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명시 후 이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위해 관련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종합자금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지원자금이 실제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농업종합자금을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체 건립에 활용하는 것이 제약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규모화·시설화 중심의 관행으로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는 소규모 가공사업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공사업의 경우 대출 금리를 현재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이 소규모 가공식품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관련 정보가 여성농업인 가공사업 참여자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정기준에서 소규모 가공업자 또는 여성농업인 가공업자를 우선하는 방안을 구속력 있게 갖출 필요가 있다. 자금운영에서 산지 소규모 가공식품 업자와 전통식품, 산지가공산업 등과 일반 음식료품 가공사업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물론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의 법률·제도적 과제와 장기적 목표는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을 확보한 식품산업의 육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비에는 현재 여러 법률로 분산된 가공식품산업 법률을 통합하여 이의 이해와 활용을 원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질 것이다. 더불어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규모 가공식품 산업 육성의 명시를 통해 농업·농촌과 국내 식품산업의 연관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가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산업, 소규모가공산업 부분은 사업특성과 시장 범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가칭 ‘지역시장·지역상품유통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이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도 제기된다. 이는 전통식품 등이 갖는 지역성·향토성·풍토성을 올바르게 살리고, 가공식품산업이 갖는 지역 활성화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 단위에서 전통식품의 표준화·규격화를 준비하고, 이의 상품화률을 높여가는 필요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군 행정,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협력과 함께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와 총체적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제 5 장 해외사례 - 일본의 농촌여성기업(起業)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농업경영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여성 자신의 의사에 따라 농업경영 및 이에 관련된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인정 농업자가 되자’, ‘농지를 취득하자’, ‘농협의 임원이 되자’, ‘농업위원이 되자’, ‘기업(起業)활동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잡자’, ‘가족경영협정을 맺자’, ‘농업자연금에 가입하자’ 등의 시책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 중 “기업(起業)활동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잡자”의 기업(起業)활동이 바로 우리나라의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일본 여성의 기업(起業)활동의 개념 정리와 함께, 여성기업(起業)의 현황 고찰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농촌여성기업(起業)의 개념과 정책적 배경

가. 여성기업(起業)의 개념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지역활성화」, 「농촌활성화」 또는 이를 통칭하여 「농촌지역활성화」 문제가 농촌문제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논의의 연장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주체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촌지역 인구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에 의한 기업(起業)이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성농업인에 의한 기업(起業)은 경영방침의 결정이나 사업실시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농산물을 식품가공 등 다양한 방안에 활용하여 수입을 획득해 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농업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부문으로 점차 시야를 넓혀나가는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직판장·오일장 등에서의 판매활동, 어린이들에게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식농교육(食農教育), 농촌 레스토랑이나 농가 민박의 운영, 농업체험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이 기업(起業) 활동의 범주에 든다. 일본

에서는 199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활발한 성장에 힘입어 2006년에는 전국적으로 9,050건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 등의 한계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상의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가타오카, 2002).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 즉 인정농업자수는 1997년 1.3%, 2005년은 약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농업위원은 1990년 93명(0.15%)에서 2004년 2,391명(4.24%)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이다. 또한 농업자연금제도, 가족경영협정 등 농촌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정비되어 왔지만 취지에 맞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에 의한 기업활동은 오늘날까지 농업경영상의 위치가 명확하지 못한 여성농업인이 농촌문제의 실질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나.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 활동의 정책적 배경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활동은 1948년 출발한 생활개선 보급사업과 관련을 가지며, 특히 1980년대 이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48년 생활개선 보급사업은 「농업개량조장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의 기술보급과 지도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을 포함한 농가경제 전반에 걸친 농업과 생활에 관계되는 사회성, 경제성에 초점을 둔 보급활동이며, 생활영역 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생활개선 보급사업은 1980년대 들어 사업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게 된다. 농촌부인 등 건강추진 특별사업, 지역건강 생활대책특별사업, 지역 내 식생활향상 대책사업, 어촌 생활개선 추진사업, 농촌고령자 활동촉진 특별사업, 생활환경개선 대책사업, 부인농업종사자 세미나 개설사업 등이 이 시기의 주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80년 일본 생활개선 보급사업의 전개와 어울려 “자가 농산물의 유효

이용에 의한 가족, 지역의 건강관리와 가계의 합리화”로서 자급적 농산물 이용·보존식으로서의 농산물 가공활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당시 농촌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조직된 생활개선실행회 중에서 농산물 가공을 그 활동의 주요 목표로 두고 있는 농촌여성회를 농촌여성가공회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이 현재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뿌리가 되게 된다(아베, 2000). 즉 각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조직화되고, 각 지역의 특징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이며 의욕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생활개선실행회의 농촌여성가공회가 현재의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여성기업(起業)의 전신인 것이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기업(起業)활동은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의 명확성을 향상시킨다는 정책방향에 잘 부합하는 내용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기업(起業)활동은 이후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추진의 이해와 함께 다양한 사업, 관련 법률 정비 등과 연계 발전을 계속해 나갔다. 그 주요 흐름은 1992년 신농정 전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92년의 일본 신농정은 여성농업자를 농업발전 중심 담당자로 처음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당시 농림수산성은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책정하여,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농업경영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학습기회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이를 계기로 기업(起業)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일본 농업에서 성인지적 정책으로 크게 주목받는 가족경영협정이라는 단어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 이후이다. 또한 1996년에는 “남여공동참가 2000년 플랜”을 책정하여 농산어촌지역의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였다. 이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장애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정책·방침 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가 확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 여성이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고령자가 안심하여 활동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 등이다. 이 시책은 “남여공동참가백서”에 반영되어 현재 관련부처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사회의 과소화, 후계자 부족, 고령화

등이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층 남녀공동참가 사회를 만들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녀공동참가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의 검토가 제안되었으며, 1999년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각종 정책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녀공동참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최근에는 시·정·촌 단계에 까지 농촌지역 여성의 참가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인정농업자수, 여성의 기업(起業)활동건수, 여성 농업위원수, 여성농업협동조합 간부수, 여성농업사, 남녀공동참가 어드바이저수, 여성의 네트워크 수 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기업(起業)활동이 이러한 활동의 단연 중심이 되었다.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 촉진을 명시하였다. 또한 2003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서, 여성의 농업경영, 지역사회에의 참가를 위한 환경정비, 여성의 기업(起業)활동 촉진을 명시하였다. 오늘날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은 일본의 농촌여성에 대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구체화 수단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 농촌여성의 기업(起業)활동도 이에 힘입어 큰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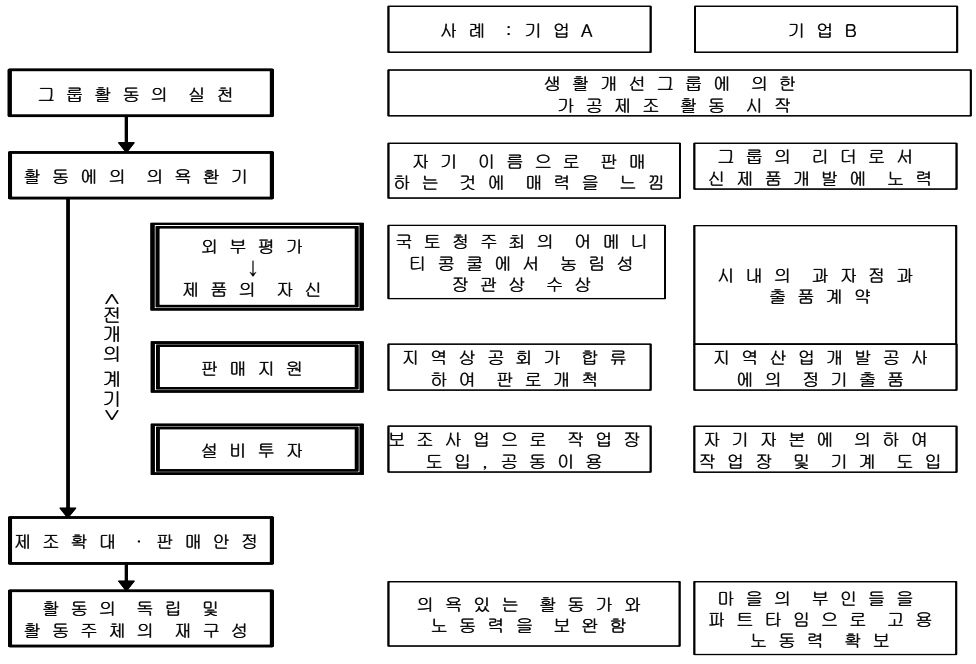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여성기업(起業)활동은 자생적으로 생활개선실행회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다 사회적 배경이나 법령에 의해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참가를 유도하는 정책이 맞물려 여성의 기업(起業)활동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전개과정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공부분의 활동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활동의 목적은 지역 특산품의 육성, 친목도모, 보람찾기 등 대부분은 지역 활성화에 두어져 있다. 기업(起業)활동의 처음 시작은 취미활동, 친목도모 등과 같은 생활개선실행회 모임에서 마을

의 이벤트 등에 참가하기 위한 활동에서 비롯되어 이후 점차 소득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발전해 가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물론 목적, 제조품목, 활동의 구성, 제조공정, 지역 내 판로의 상황 등에서 아주 다양한 전개과정을 보이지만 대체로 <그림 5>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기업(起業)활동의 전개 흐름



자료 : 일본 이와테현 시험연구성과 자료 “농촌여성에 의한 가공부문의 기업(起業)활동 실태와 지원방책” 인용, 1997년.

첫째 단계는 그룹활동 참가를 통한 기술습득이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 등에 참여 기회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아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 다음 단계로 외부의 지원을 받아 판로를 확보하고, 자신의 투자능력에 맞는 설비확장을 시도한다. 이어서 파트타임 고용 등 노동력을 확보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 성립되는 상태에서의 활동 주체 또는 조직을 재편한다. 그런 다음 그룹의 활동을 인정받아 기계설비 확충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정부나 현, 시·정·촌의 사업보조를

받아 사업을 전개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다.

라. 일본 농촌여성기업(起業) 활동의 의의

여성농업인의 기업(起業)활동을 경영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으로서 주목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여성기업(起業)」은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기업(起業)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起業)규모의 영세성, 저수익성, 그리고 고령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활동만을 대상으로 여성기업(起業)을 평가하는 것은 농업의 상대적 저위성, 농업후계자 문제 등과 같은 농업·농촌 현실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기업(起業)의 의의와 역할의 올바른 판단은 경제적 평가를 넘어 농업과 농촌사회의 활력 찾기 등 다양한 방안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모로(2004)는 농촌여성 기업(起業)의 그룹 활동에 관한 다면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가여성 개인에 관한 효과, 가정에 관한 효과, 그룹 리더에 관한 효과, 지역에 관한 효과, 그리고 기타항목 등이 다면적 효과 항목으로 활용되었다. 다면적 효과 분석은 기업(起業)활동에 참가한 여성 개인의 활동이 가정과 지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DEMATEL¹⁹⁾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다면적 효과는 그룹의 활동내용, 그룹 구성과 같은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효과에 대한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회원들의 수입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가족의 이해와 가정 내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한다. 그 결과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풍성해지고, 노동의욕이 향상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의욕의 향상은 다른 항목(개인, 가정, 지역에

19)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법은 2요소간 관계에 대해서 달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의 전체구조를 밝히는 구조 모델링법의 하나이다.

관한 효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른 항목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한층 촉진시키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2005)는 어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기업(起業)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지역의 미이용 자원의 유효이용이라는 자원면에서의 의의, 부수입기회의 창출이라는 농가경영과 여성노동의 경제적 평가에서 본 의의,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그룹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지역 사람과의 교류라는 지역진흥의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여성기업(起業)의 선진사례(2004) 활동내역은 대부분의 여성기업(起業) 설립 목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起業)의 의의는 경제적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부문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기업(起業)활동이 지역의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로, 여성기업(起業)의 가공품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이다. 효고현은 된장과 매실절임이 특산품(효고 브랜드상품²⁰)으로 자리잡자 생산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대두산지협의회(생산자, 보급지도센터(옛명칭-농업개량보급센터,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에 해당), 농협이 설립)와 매실생산조합을 결성하였고, 이 두 조직의 농산가공에 대한 협력체제의 정비로 지역농업활성화가 촉진되었다. 자신이 직접 농사지는 농산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들의 협력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둘째로, 농촌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오카야마현은 온난한 기후로 꽃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이 격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새로운 특산품 만들기가 마을의 과제가 되었다. 이 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여성기업(起業)이 설립되고, 이 여성기업(起業)은 오키나와 특산 농산물인 고야(여주 또는 고과(苦瓜). 일본에서는 니가우리라고도 부른다)를 지역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고야의 재배 기후가 이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 농가에게 고야재배를 하도록 설득하여 고야재배가 시작되었다. 일본내

20) 효고현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사육·제조방법 등에 특색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인증기준을 정하여, 인증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식품을 효고현이 인증하고 있다.

고야의 주산지인 오키나와 지역은 8월이면 고야출하가 종료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10월 상순까지 출하가 가능하고, 육질이 두껍기 때문에 시장평가도 좋아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갖출 수 있었다. 이에 비규격품은 가공용으로 사용하여 고야잼, 고야우동 등을 개발하게 되어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기업(起業) 활동이 지역 특산품 개발로 이어져 지역활성화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2.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 활동의 현황

2006년도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여성에 의한 기업(起業)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여성기업(起業) 수는 전국에서 9,050건에 이르고 있다. 업태별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이 가장 많았다. 판매금액은 300만엔 미만이 5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000만엔 이상의 대규모 경영도 2005년보다 60건이나 증가하였다. 한편 법인화하고 있는 기업(起業)은 전체의 4%에 지나지 않았다.

가. 여성기업(起業)수 동향 및 판매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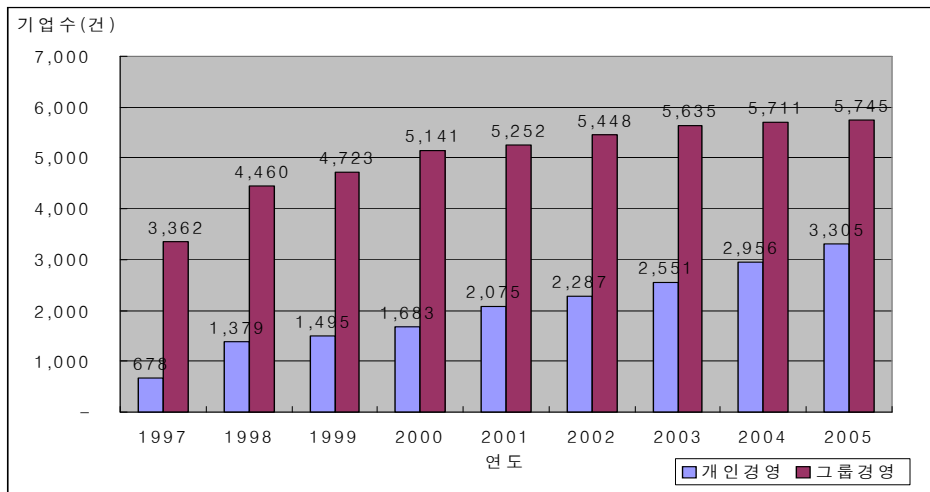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여성기업(起業)은 1997년 4,040개에서 2005년 9,05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10년이 채 이르지 못한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여성기업(起業)의 형태는 개인경영과 그룹경영으로 구분되는데, 2가지 모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룹경영의 성장보다 개인경영의 성장률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개인경영의 비중이 16.78%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후 지속적 성장으로 2005년에 이르러서는 36.52%로 늘어났다.

개인경영의 비중이 그룹경영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기업(起業) 성장이 개인의 창의에 의해 자유롭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다양한 장기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취미생활에서 지역발전에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룹경영의 경우도 참가자 수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경영의 비중이 큰 비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소규모 그룹을 통한 자유로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28>은 일본 여성기업(起業) 그룹의 구성원 수 기준의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명 이하가 3,032개소로 전체의 52.8%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10~19명까지의 그룹경영이 1,431개소로 24.9%를 이룬다. 전체 그룹에서 20명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3개, 77.7%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6> 여성기업(起業)수의 동향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보급·여성과, 2006.

개인경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 인원 중심의 그룹활동은 여성기업(起業) 활동의 다양성과 활발한 참여의 결과로 짐작된다. 경영면에서 큰 성과를 올리기보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발전 전략 등 다양한 범위에서 여성기업(起業)이 관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인경영이나 소규모 그룹활동은 판매규모를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표 28> 그룹경영의 구성원수(2005년)

(단위 : 건, %)

구성원수	10명 이하	10~ 19명	20~ 29명	30~ 39명	40~ 49명	50~ 99명	100명 이상	불명
건수 (%)	3,032 (52.8)	1,431 (24.9)	488 (8.5)	230 (4.0)	127 (2.2)	248 (4.3)	134 (2.3)	55 (1.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보급·여성과, 2006.

2005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300만엔 미만의 여성(起業)이 5,356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규모 면에서 다수 업체가 과반수 이상이 영세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500만엔 이상 매출액을 올린 여성기업(起業)수도 전체의 24%나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500만엔 이상의 여성기업(起業) 수는 1997년의 21%(853건)에서 2002년 23.5%(1,815건), 2005년에는 24%(2,203건)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범위에서의 여성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도 여성기업(起業)이 규모 확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9> 여성기업(起業)의 판매금액

(단위 : 건, %)

내용	300만엔 미만	300~500만엔 미만	500~1,000만엔 미만	1,000만엔 이상	불명
건수 (%)	5,356 (59.2)	1,095 (12.1)	1,003 (11.1)	1,200 (13.3)	396 (4.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보급·여성과, 2006.

나. 여성기업(起業) 경영내용 및 운영형태

여성기업(起業)의 경영내용은 농업생산, 식품가공, 식품이외의 가공, 판매·유통,

도시와의 교류,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 도·농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농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경제활동이 총망라되고 있다.

성격별로 세분해 보면 농업생산은 여성이 중심이 된 작목경영, 낙농헬퍼 등을 말하며, 식품가공은 농림축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도락 산업을, 식품이외의 가공은 먹을거리 외의 지역특산품, 수공예품 생산 등을 의미한다. 유통·판매는 지역시장 등에 직판장을 개설하거나 택배 등을 이용해 농림축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와의 교류는 농업·농촌환경을 활용한 체험농원, 관광농업, 농촌레스토랑 등의 경영으로 도시인을 지역 내에 불어와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고령자를 위한 양로사업, 계절 보육원의 운영, 정보지 발행, 도시락 택배 등은 지역 생활과 관련한 사업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표 30>은 2005년 여성기업(起業)의 활동내역을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로 전체 사업장 9,050개 대비 식품가공의 비중이 75.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起業) 활동에서 식품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판매유통이 3,999개로 44.2%로 2위를 차지했으며, 농업생산, 도시와의 교류, 서비스업 등이 다음을 이었다.

<표 30> 여성기업(起業)의 경영내용(2005)

(단위 : 건, %)

내용	농업생산	식품가공	식품이외의 가공	판매, 유통	도시와의 교류	서비스업	기타	불명
건수	1,421	6,816	343	3,999	995	55	42	7
(%)	(15.7)	(75.3)	(3.8)	(44.2)	(11.0)	(11.0)	(0.6)	(0.1)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보급·여성과, 2006.

일본 여성기업(起業)에서 주목할 점은 운영형태이다. 많은 여성기업(起業)이 법인화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95.7%에 해당하는 8,658개소가

법인화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법인화를 하고 있는 곳은 344건으로 전체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인화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起業)활동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규모, 세금관련, 고령화 등이 종합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화의 형태 중에는 유한회사로의 전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이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등이다.

<표 31> 여성기업(起業)이 법인화 현황(2005년)

(단위 : 건, %)

	법인화 하고 있지 않다	법인화 하고 있다					불명
		소계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기타	
건수	8,658	344	204	72	11	57	48
(%)	(95.7)	(3.8)	(59.3)	(20.9)	(3.2)	(16.6)	(0.5)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보급·여성과, 2006.

다. 예산지원

일본 내각부의 남여공동참가백서(2006)는 농산어촌 남여공동참가 확립을 위한 시책을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한 장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가 확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 여성이 살기 편하게, 활동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의 정비이다. 남여공동참가 확립에 관한 예산도 이 5가지 시책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각 시책에 따른 200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장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과 정책·방침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가 확대를 위한 부분에 631,042천엔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농산어촌의 여성 사회 참가 및 경영참가를 촉진하고자 하며, 시·정·촌 단계에서의 여성 참가목표의 설정 및 그 달성을 향한 체제정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둘째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42,777,271천엔²¹⁾(여성우선 대부금 제외)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여성을 농림수산업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위해 여성인정농업자의 확대나 가족경영협정체결의 추진, 경영능력향상 연수에 의한 여성의 농업경영활동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도록 여성농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起業)에 관한 전국회의의 개최, 연수의 실시를 진행한다. 여성기업(起業)을 위한 농업개량자금을 우선 확보하고, 여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농업자에 대한 기계·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임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도 기업(起業)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산·어촌 여성의 기업(起業)그룹이 행하는 임수산물의 가공·판매를 지원한다.

셋째로 여성이 살기 편하게,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위해 52,479,055천엔²²⁾이 투입된다. 이 예산액으로 농산어촌에 있어서 여성이 생애를 통해서 농림수산업이나 지역활동 등에 참가하고,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 있어서 육아지원체제의 정비, 여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제공, 여성 네트워크화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넷째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하며 살 수 있는 조건 정비를 위해 32,968,453천엔을 투입한다. 이 자금은 농촌지역의 고령자 활동에 대한 계발,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 등을 통한 고령자 자립적 활동, 고령자가 가진 경험이나 기능의 공유 및 활용 등에 주로 활용된다. 또한 농협이나 조합원 조직이 행하는 농촌의 고령자 대책 등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21) 이 예산액은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인 40,505,635천엔 중 내수로 사용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환경정비만을 위해 이 모든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22)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를 위한 예산과 마찬가지로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인 40,505,635천엔 중 내수로 사용하는 금액이다.

라. 교육프로그램

일본 농촌 여성기업(起業) 그룹 형성은 다양한 계기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식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다수 보인다. 즉, 지역사회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문화 연구 모임이라던가,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연구모임을 계기로 한 농촌 여성의 기업(起業)활동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대개의 공통점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모임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기업(起業)을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기업(起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연구모임 등과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지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모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起業)의 창업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여성기업(起業)이 창업 과정 중 상품개발과 제품출시 등으로 여러 해 동안의 준비기간이 걸리는 사례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창업준비 기간에는 지역의 보급지도센터, 농협, 지자체 등 지역과 각종 지역단체 등이 자신들의 활용이 닿는 부분에서 다양한 협력을 제공한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교육장을 빌려준다든지, 제품개발 관련 타 지역 강사를 초빙 교육과정을 열어주는 사례도 있다.

지역과 각종 지역단체의 교육 외에 농림수산성 지원의 사단법인 농산어촌 여성·생활지원협의회의 교육도 여성기업(起業)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활용해 조직적·체계적 교육을 행하기도 한다. 창업과정 뿐만 아니라 개업하고 있는 여성과 현재 구체적으로 기업(起業)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좌 “스텝업 농촌여성기업(起業) 전문가 양성강좌”도 개설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판매·경영전략, 경리·세무관리, IT 활용 지식 습득 등으로 기업(起業)경영의 한 단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좌는 통신강좌로 이루어지며, 농사일이나 가정의 스케줄에 맞추어 자신에 맞는 학습계획(6개월)을 세워 교재를 읽고 스스로 공부하여 수행과제물, 질문지 등을 제출하다. 과제물들은 강사진에게 보내 첨삭지도를 한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전국의 수강생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워크숍을 실시한다.

<표 32> 스텝업 농촌여성기업(起業) 전문가 양성강좌의 내용

교육테마	교육내용
농산물 유통의 현상과 금후 경영전략	농산물유통의 현상
	소비자기점의 판매전략
	e 커머스, 산지직판의 현상과 가능성
	금후 경영전략-부업에서 비즈니스에
여성기업(起業)의 현상과 금후 전개방향	여성기업(起業)의 현상과 그 특징
	여성기업(起業)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의
	여성기업(起業)의 금후 전개방향
기업(起業)경영의 지식	사업계획
	제도자금 등의 활용과 자금계획
	회계관리와 세무관리
	법인화에의 절차방법과 유의점
인터넷 비즈니스의 실천	홈페이지의 구조
	홈페이지 활용의 포인트
	홈페이지 작성과 갱신
	메일의 활용
강연회 (강의에 의한 강습회)	농산물류의 현상과 금후 경영전략
	여성기업(起業)의 현상과 금후의 전개방향
	기업(起業)경영의 지식
	인터넷비즈니스의 실천-홈페이지 작성의 실연
	수료생의 개업사례 소개

자료 : (사)농산어촌 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홈페이지 www.weli.or.jp

3.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 주요 사례 및 시사점

일본의 농촌여성들의 기업(起業)활동 내용은 농작업, 신규작목의 공동경영 등의 농업생산, 잉여생산물의 가공, 특산식품의 개발, 염색, 직조 등의 식품이외의 가공, 레스토랑, 직판장 운영, 농가의 민박, 체험농장, 관광농원, 계절유치원, 공동급식, 교육, 문화, 복지에 관한 서비스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2004년도 여성의 기업(起業) 활동 선진사례에서는 이를 농업경영, 농산물가공품 제조 판매, 직판장 운영, 식육(食育)이나 농업체험 등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산물 가공품의 제조 판매에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본 절에서는 농산물가공관련 여성기업(起業) 활동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주요 사례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활동(起業)은 크게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조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장과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起業)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기업(起業)의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의 농촌여성기업(起業)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어떠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둘째는 정부 등의 지원 없이 기업(起業)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요인, 또는 어떠한 동기에 의해 활발하게 기업(起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①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기업(起業)의 회원의 집과 같은 개인시설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을 해 오다가 기업(起業)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보조를 받는 경우이다.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起業)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기업(起業)활동 초기에는 기존에 지어진 마을의 시설, 농협의 공간을 빌리거나 회원의 집을 이용하여 가공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생산량이 늘어나자 가공공장을 건설, 또는 증축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처음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 진행 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起業)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起業)의 설립과 동시에 사업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여성기업 설립에 있어 동기를 부여하는 자가 시나 농협, 또는 기존의 여성모임인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가 여성기업(起業)의 설립에 동기를 부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이바라키현의 시모즈마시는 시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 “(주)후레아이 시모즈마(시모즈마시, JA히카리, 상공회의소가 출자)”에 의하여, 식(食)을 통한 건강만들기와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구조개선사업, “리후레쉬사업”으로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시내의 여성그룹이 이 시설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기업(起業)활동을 시작하였다. 즉, 시의 사업구상과 여성그룹의 활동이 서로 연결되어 대규모 기업(起業)활동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②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여성기업(起業)을 추진하는 경우는 주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례이다. 지역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성그룹이 형성되어 기업활동(起業)을 개시한 경우이다.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起業)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계기로 여성기업(起業)을 시작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성기업(起業)의 활성화 요인동기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눈에 띈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마을의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여성 세미나 과정 중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세미나 마지막 날의 시식회에서 이 제품의 특허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마을의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시

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서 약선우동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제품판매에 나섰다. 이러한 여성기업(起業)들의 사업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주목되는 점은 여성그룹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에히메현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전통차(일본에서도 독특한 발효차)의 제조기법을 계승하기 위해 마을의 여성그룹이 전통차의 부활과 상품화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보급지도센터, 농협, 마을의 공동협력이 있었다. 차잎은 마을의 폐원된 차밭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수확작업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담당이었고, 운반은 실버센터에서 협력을 해주었다. 그리고 농협에서 창고를 빌려줘 가공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을의 전통차 부활을 위해 마을 전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에 여성기업(起業)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홋카이도의 경우 자가 재배한 시소(차즈기 또는 소엽)를 개인이 농축하여 음료를 만들어왔다.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면역력 강화, 알레르기 개선에 좋은 시소음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여성기업(起業)을 설립하였다. 이에 보급지도센터에서는 제조, 가공, 위생관리 지도를 받았으며, 마을의 협력을 얻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다.

사가현의 경우 1993년 국영농지개발 사업에 의해 매실의 산지가 조성되어 현재 현 내 최대 산지가 되었다. 이에 이 매실을 이용하기 위한 여성기업(起業)이 설립되었다. 매실 가공품의 제조, 판매를 시작함에 있어 사전에 농협, 시청, 보급지도센터, 현립 이마리 고등학교의 지도를 받아 가공기술의 습득과 가공품 개발을 하여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완성시켰다.

한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여성기업(起業)활동이 아닌 지역의 요청에 따라 여성기업(起業)이 형성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지원 없이 이뤄진 경우이다.

아오모리현의 경우,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겨울철 상품으로 지역에 절임을 만들었던 여성모임에 납품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이 여성모임이 기업(起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효고현의 경우 아마지 지역 특산물 판매점에서 특징있는 지역 가공품을 찾아

나선 것이 생활개선그룹의 여성기업(起業) 결성 계기가 되었다. 마침 아미지 생활개선그룹에서 마늘을 이용한 불고기 소스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고, 이의 상품화를 계기로 여성기업(起業)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시즈오카현의 경우, 원래 감의 산지였으나 너무 익은 감은 출하할 수가 없어 농가의 주부가 폐기되는 감을 이용하여 집에서 콧감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동네의 다른 주부들로부터 호평과 함께 판매 요청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농촌여성 6명이 콧감을 만들어 지역 이벤트와 함께 판매에 나서게 되었다.

나.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시사점

이상의 선진사례에 대한 소개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기업(起業)은 많은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표 33>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리한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활동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현재 농촌여성 기업(起業)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촌여성 기업(起業)의 문제점들로 지식부족, 기업(起業)운영의 자금부족, 정보의 부족, 기업자 간의 연결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되는 부분들이다.

<표 33> 일본 농촌여성 기업(起業) 활동의 문제점

문제점	해결책
기업(起業)에 관한 지식부족	여성기업(起業)가를 대상으로 한 기초지식, 전문적 지식, 세금대책, 마케팅, 가공·경영 등의 연수
기업(起業)시 자금부족	자금대부의 확대, 자금대부요건의 완화, 시설·기재 정비 등
정보의 부족	정보제공의 시스템화, 우량사례의 정보교환, 정보교환의 장 만들기 등
기업(起業)자간의 연결부족	전국정보교환이나 판매의 네트워크화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다만 그 해결과제의 구체성에서 주목할 부분인데, 일본은 <표 33>에서 제시하는 많은 해결과제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함께 극복과제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초로 일본의 농촌여성 기업(起業)의 사례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여성기업(起業)의 경우 부담 없이 소박한 규모로 여성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경영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그리고 법인화 추진은 사업규모 확대 등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본 연구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업화에 따른 세금, 보험, 사업장 부지 인허가 등의 부담을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안내나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일본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여성기업(起業)보다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起業)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기업(起業)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강사초빙, 장소제공 등 지역에서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기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없이도 활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사정은 가공식품 사업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기술습득,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갈망하는 국내 가공식품 사업 참여 여성의 현황과 큰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가공식품 사업 참여도 개인이나 특정 법인의 사업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구체적 네트워크에 의한 발전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여성기업(起業) 활동은 경제·경영적 측면의 고려를 넘어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와 큰 연관 속에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공식품 사업 중심의 여성기업(起業)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은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노동의욕 향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선택에 의한 여성기업(起業)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1.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총괄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가공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체계의 미비로 양성평등 관점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왔다. 농림부 정책담당자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사업관계자가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성별 관련성이 없다거나 또는 현재의 집행이 양성평등에 부합하고 있다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구체적 이해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미 창업단계를 마친 일반 가공기업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그 출발점을 기 설립 가공식품 기업이 아닌 자연인인 농업인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농산물가공육성지원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으로 압축되고 있는 현 단계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수혜 대상이 실제 얼마인지의 객관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부지원 농산물가공공장 현황의 대표자 명의를 통해 산지일반가공 또는 전통식품개발 기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13.61% 정도로 짐작됨을 확인 해 보았다. 이 수치는 비록 추정이지만 할당제와 가산점을 두며, 여성농업인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에서 여성비율 8.8%보다 높은 수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에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 참여 여성 기업가들에게 있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대한 여성농업인 접근의 취약성은 2가지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은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대출 방식이 자금상환 능력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다수는 이미 시설설비 등에 담보물을 활용한 상황이며, 따라서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에 응할 담보력을 갖지 못한 상황

이다. 다음 측면은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를 통해 창업한 여성기업의 경우인데 이들 중 다수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업체들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홍보가 인터넷, 전문지 광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으로 성차별 없이 객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규모 가공사업 참여 여성기업인을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가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기업가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는 기 설립 가공식품 기업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정책체계를 지속가능한 농업의 관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 지위향상 차원에서 창업 준비 단계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식료공급의 중심 역할은 제1차 산업형태의 농업생산 측면에서 가공식품 산업을 포괄한 식품산업 전반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에 농정에서 농산물가공사업을 포괄한 식품산업 전반으로의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사업도 기 설립 가공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농업인의 구체적 요구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구체적 요구를 통한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재편은 농정에서의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더불어 현재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그리고 그 외의 관련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사업 분야의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 특성의 구체적 분석을 전제로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관리·감독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 국내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관을 전제로 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역과 농업인, 해당 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범위에서의 농산물가공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 획일적 관리·감독과 산업육성의 지양과 함께 농산물가공산업 운영체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제기된다. 전통식품산업, 향토음식산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전통문화보전과 지역발전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요구이다. 이 같은 제기는 규모화·시설화 위주의 현 단계

농산물가공산업의 지양과 함께 지역시장과 농업인의 수용 요건에 맞는 맞춤형 가공사업 지원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갖는 기본 속성상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가공산업 진출 확대 즉,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산업 창업지원의 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 국내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의 발전방향과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산물가공사업을 포괄한 현 농정의 식품산업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본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농산물가공산업과 여성농업인의 연계강화 방안은 곧 농업·농촌과의 구체적 연계 확보의 요구로 집약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접근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 설립된 기업 중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을 자연인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다 확대해 새로운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출발점은 창업교실의 개설로 가공지원사업의 출발점이 당겨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농업인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접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등에 대한 교육기회를 넓혀서 가정생활 속의 장기가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창업교실에서는 창업 아이템의 소개, 기업 또는 공동체 설립 등을 통한 사업전개 방안의 제시, 새로운 기술 습득기회, 우수 사례에 대한 사전 체험 기회 마련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참여자의 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과 사후 관리에 대한 나름의 지도와 교육을 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협동조합 등의 상호 협력과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기구에서 실제적으로 식품산업 정보를 종합하고, 농업인의 활용이 닿을 수 있는 범위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도 충분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결과 등을 참고할 때 이러한 교육에서는 창업방법에서부터 홍보전략 수립, 판매전략의 수립, 회계처리, 세금관계 등 기업활동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들이 망라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와 시장동향, 여성가공기업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 이후의 사후관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앞의 연구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지가공지원사업에서 다수 가공업체가 현재 가동중단에 들어간 것은 당시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시설화를 진행한 것이 한 원인이었다. 더불어 마케팅 등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된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체계 속에서는 기업설립 후 전국을 무대로 값싼 수입농산물을 이용하는 대기업과의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틈새시장·지역시장·지역상품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상품 차별화 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소비자 및 시장동향의 체계적 분석을 행하는 것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상품개발 전략, 시장전략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국적 획일적 관리·감독 체계를 지역단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과정에서 다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지역실정과 농업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창업활동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식품산업 운영이 현실적 요구와 무관하게 시설화·규모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기존의 기업형 음식료품 기업과의 경쟁으로 내모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아이템으로 소규모 창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가정 단위의 시설과 설비에서 행하는 저차 가공식품의 상품화 모색 등도 중요한 방안이다.

그리고 가정 단위의 시설과 설비를 통한 소규모 창업 그리고 차별적으로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 활동의 관리·감독은 전국적 단위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지역차원의 구체성 속에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농정 식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식품산업의 육성도 이 같은 취지의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업과 일상적인 대면 관계에 있는 기초 행정단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구체적 파악과 함께 그에 준하는 시설과 규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 관리·감독 체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이 큰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생산규모와 판매지역의 차별화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그 외의 관리·감

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체화할 필요의 제안이다.

설문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획일적 관리·감독 그리고 시설의 문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 하수도법 등이다. 그리고 그 지적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가공식품 사업특성에 대한 구체적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기농가공식품 공장이나 천연염색 공장 등에서 이용하는 물을 일반 음식료품 가공공장과 화학염색의 폐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의 문제제기도 이와 관련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후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건강식품 생산이 시설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 창업에 대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그 만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넷째, 위의 지적과 연계해서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방식에서 농가단위 소규모 지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농산물가공지원 기업의 현재 가동률이 51.71%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보다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진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의 경우는 85.9%가 정상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은 법률적 근거미비 등으로 사업의 지속화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농정에서 적극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식품산업육성법 등의 제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포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의 개정으로 소규모 가공식품 산업 육성지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을 구체화할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보다 손쉬운 접근이 요구된다. 설문과정에서 몇몇 여성농업인은 최소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현 제도가 여성농업인의 가공사업 참여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의 가공사업 참여는 개인 또는 법인형태의 참여가 가능한데, 개인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법인, 농어가 공동 또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나뉘지고,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이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 제도 속에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연대한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개인의 경우 지역 내로 시장을 제한하고, 지정된 시설 등에 농가 실명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상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 등에 제한은 함께 둘 필요가 있다.

3. 정책제언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이에 기초한 가공식품 사업 창업지원방안은 가공식품 포함 식품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농정체계 개편과 연계해 살펴볼 부분이다. 현 단계 농정은 제1차 산업인 농업생산에 중심이 두어져있으며, 그 한계로 식품산업의 주요 영역에 포함되는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의 위상을 올바로 갖추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식품산업육성법 제정 움직임 등의 구체화를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일반 음식료품 산업 발전과 구분하여 국내 농업·농촌과 연계한 농산물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가공식품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산지가공산업, 전통식품산업 그리고 지역의 구체성을 담은 소규모 가공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가공식품산업육성조례 등에서는 사업규모와 시장범위를 조건으로 사업체 설립 이전 단계에서 가공식품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해 볼만 하다.

현 농정체계에서 여성농업인 가공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한 요청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자연인인 농업인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은 사업은 구체적 범위에서 기 설립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갖고 가공식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충분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업교육에서부터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범위를 새롭게 설정해 현장 여성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필요가 제기된다.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실제적 지원기구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에서부터 가공식품사업 경영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가공식품 산업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담당한다. 그리고 시·군행정,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협력하여 이의 전달과 관련 사업의 실제적 집행단위로 역할하도록 한다. 창업보육센터의 기본 역할은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여성농업인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방안의 제시이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창업과정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및 시장동향의 조사·분석은 향후 가공식품산업 발전방향의 참고자료로 중히 활용될 부분이며,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의 기본 역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의 성별분리 통계는 창업보육센터 활용과 별도로 현행 체계에서도 정비가 가능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업체 실태조사에서 성별통계를 포함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성별분리 통계는 여성기업가의 수에 그치지 말고, 가공식품 유형별 분류와 참여특성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주력하는 가공식품 산업 분야는 어디인지, 지역 여성농업인의 참여범위는 어떠한지 등을 고용현황 파악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분리 통계의 파악은 젠더이해에 기초한 여성농업인 가공식품사업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지역 활성화 전략 등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들이다.

창업보육센터 설치 이전에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력육성 사업 등에서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창업교육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제1차 산업 중심의 농업생산자 교육을 탈피하고, 인력육성, 인적자원개발 계획 등에서 가공식품 사업부분을 적극 도입토록 해야 한다. 교육사업의 전개는 식품산업과의 독자적 전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성정책과 그리고 교육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경영인력과 등을 포함한 범 부처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여성농업인 가공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안은 여성농업인 가공산업 육성의 직접적 명시하는 것과 또는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의 명시를 통해 내용적으로 이를 담보하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의 명시는 지역의 구체적 여건과 농업인의 현실적 요건에서 다양한 범위의 가공산업 육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 근거는 현재의 산지가공산업육성, 전통식품산업, 전통외식업 육성 등이 여성농업인 등의 자율적인 규모와 방식에 의한 가공식품 사업 육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여성농업인의 가공식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참여가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가공지원자금과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 등이 여성농업인의 실제적 활용이 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농업종합자금의 농산물가공지원자금이 여성농업인 가공식품 사업에 실제적 활용이 되지 못한 점은 현재까지의 운영이 규모화·시설화 중심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농산물가공식품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관련 있다. 이에 향후 지역의 구체성과 농업인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자유로운 규모에서 농산물가공지원자금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식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및 지도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은 일반 가공식품업체와 산지식품, 전통식품 등이 구분 없이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운영 시스템의 검토가 요구된다.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역할을 국내 농산물 구매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국내 농업·농촌과의 연계속의 가공식품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교두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다소 엄격한 내용으로 일반 음식료품 업체와 산지가공 또는 전통식품산업과의 구분이 요구된다. 지역농산물 구매 등을 조건으로 자금운영에서부터 일반 음식료품 산업과 산지가공산업 또는 전통식품산업의 구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의 지급기준의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현재의 지원 우선순위는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선순위 보다는 점수제로 실제 전통식품 산업 발전에 확실한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공식품업체에 대한 금리를 1.5% 정도로 하여 이를 통한 가공식품사업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근·송동흠·허미영, 2005, 『농업종합자금지원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김복규 외, 2006, 『농촌여성중심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 전략연구』, 농촌진흥청
-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 김철민·지호선, 2004,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 이동필 외,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수철·권승구·위태석, 2005,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 비교연구 및 개발』,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 황수철·성현정·장정혜, 2006, 『산지-식자재업체-외식업체를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 농수산물유통공사, 『'05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농산물가공업체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6. 9
-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공공장현황』, 2006. 9
- 20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日本岩手県農業研究センター平成10年試験研究成果, 農村女性による加工部門の起業活動の実体と支援方策, 1998年.
- 諸洋子, 矢野泉, DEMATEL法による農村女性起業グループ活動の多面的効果の構造把握, 日本農村計画学会2004年度秋大会学術発表資料集, 2004年.
- 副島久実, 村上幸二, 漁村女性起業グループ活動の持続条件に関する一考察-高知県宿毛湾地域を事例として-, 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第1巻, 日本漁業経済学会, 2005年.
- 日本内閣府, 第2部平成17年度に講じた男女共同参加社会の形成の促進に関する施策, 平成18年度版男女共同参加百書, 2006年.
- 日本農林水産省経営局普及・女性課, 平成17年度農村女性による起業活動実体調査の概要, 2006年.
- 日本農林水産省農林漁業現地事例情報, 女性グループの農林水産業の取組事例, <http://www.jri.maff.go.jp/jirei/doc/2004/008/000.html>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입각하여 법령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목적은 정책담당자로서 앞으로 이 지표를 토대로 성-인지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 귀하 가공사업의 사업체의 설립형태는?

①개별사업자 ②농업회사법인 ③영농조합법인 ④주식회사 ⑤기타

1-2. 귀하의 가공사업장의 구성원은?(대표, 직원 등 구성원과 그 수)

2. 귀하의 가공사업 경영형태는?

①가공사업에만 전념함 ②농사와 병행함 ③농한기 등 계절별 경영 ④기타

2-1. 귀하의 가공사업 경영에서 배우자(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별 참여 없음 ②대외 관계 등 부문별 협력자 ③동반 사업자
④실질적인 경영자 ⑤방해꾼 ⑥배우자 없음 ⑥기타 :

3. 귀하가 행하는 가공사업의 종류와 상품은? 주로 어느 지역에 파십니까(판매

처)? 그리고 가공원료는 어디서 구입을 하십니까?

4. 귀하께서는 가공사업에 참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 ①정부지원과 관계기관의 권유 ②농가소득 증대 등 돈벌이 수단
- ③여성농업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④장기 특기 실현을 위해
- ⑤작목반이나 부녀회 등에서 이벤트용으로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경험이 있어서
- ⑥기타

4-1. 귀하께서는 가공사업에 참여한 이후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 ①농업전문 인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②각종 사회활동 기회가 많아졌다.
- ③농업생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 ④특별히 좋은 점이 없다.
- ⑤참여를 후회한다 : 이유는?

4-2. 주위 여성농업인에게 가공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5. 귀하의 가공사업 참여 이후 농가소득은 얼마나 증대되었습니까.

5-1. 수익은 가정 내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 생활비로 보탬, 다시 가공사업에 재투자, 교육비, 농사에 투자, 여가생활 등)

6. 귀하는 가공사업 신청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①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렵다 ②가공사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부족
- ③집안의 반대(남편, 부모님 등) ④기타

6-1. 가공사업 참여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 ①여성기업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 ②금융거래 자금대출 등에 불이익
- ③여성사업가를 기피하는 사회조직 ④기타

7. 귀하는 가공사업 참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전문 사업가로서 능력이 필요하다.
- ②원료구입자금 등 경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④노동강도가 너무 심하다.
- ⑤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⑥시설규제 등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⑦정보가 없다.
- ⑧기술습득이 어렵다. ⑨기타

8. 가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정책상 개선요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식품위생 측면 :
- ②시설측면 :
- ③관리·감독측면 :
- ④기타 :

8-1. 법·제도·정책상의 개선과제 중 여성농업인의 독특한 요구, 또는 여성농업인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9.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정부의 가공산업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1. 귀하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공산업 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전문경영인으로서 교육기회를 갖고 싶다.
- ②가공사업과 연계할 여러 조직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
- ③기술향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④마케팅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 ⑤시설 지원 등 사업확장 지원이 필요하다.
- ⑥원료농산물의 안정적 구입이 필요하다.
- ⑦기타

10. 가공원료수매자금을 알고 계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10-1. 가공원료수매자금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 ②없다. 없다면 그 이유는
 - 자체자금으로 충분하다 - 금융상 이점이 없다 - 담보가 없다
 - 제도 자체를 몰랐다.

10-2. 가공원료 수매자금 대출시 여성농업인으로 차별받은 사례나, 대출을 꺼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10-3. 여성가공업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11. 여성농업인에게 어울리는 가공사업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귀하의 가공사업장에서 실질적 역할은?(우선순위 중복응답)

- ①사업 대표자 ②전문경영인 ③기술자 ④단순 노무자 ⑤명의만 빌려줌 ⑥기타

13. 귀하의 연령은 ?

14. 귀하의 농사경력은 ?

15. 귀하의 학력은 ?

16. 가공사업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